

**중국행정복의제도 운영사례 및 자료수집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8. 7.

국 민 권 익 위 원 회

I . 출장결과	1
1. 출장개요	1
2. 방문기관 면담 내용	4

II . 방문지역(북경) 개요	15
------------------------	----

III . 방문기관 개요	16
1. 중화인민공화국사법부 행정복의사	16
2. 북경시인민정부법제판공실	24
3. 중국정법대학 법치정부연구원	32

IV . 중국의 행정복의제도	33
1. 행정복의제도의 근거법령	33
2. 행정복의제도의 주요 내용	34

〈참고사항〉

□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법	48
□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실시조례	68
□ 북경시행정조해판법	91

I

출장 결과

1. 출장 개요

□ 출장국 및 방문기관

출 장 국	방 문 기 관
중 국 (북경)	• 중화인민공화국사법부(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 행정복의사(行政复议司) • 북경시인민정부법제판공실 (北京市人民政府法制办公室) • 중국정법대학 법치정부연구원 (中国政法大学 法治政府研究院)

※ 복의(复议): “원래의 결정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제도에 따라 행정복의(行政复议)를 행정심판으로 표기하나, 본 보고서는 행정복의라 표기함

□ 출장기간

○ 2018. 6. 25.(월) ~ 2018. 6. 28.(목), 3박 4일

□ 출장자(3인)

- 단 장 : 행정심판국 심의관 임규홍
- 기 획 · 연 구 : 행정교육심판과 오애숙 사무관
- 총 괄 · 섭 외 : 사회복지심판과 황정은 사무관

※ 지 원: 대한민국주중대사관 정효삼 법무협력관
통 역: 구효영

□ 기관방문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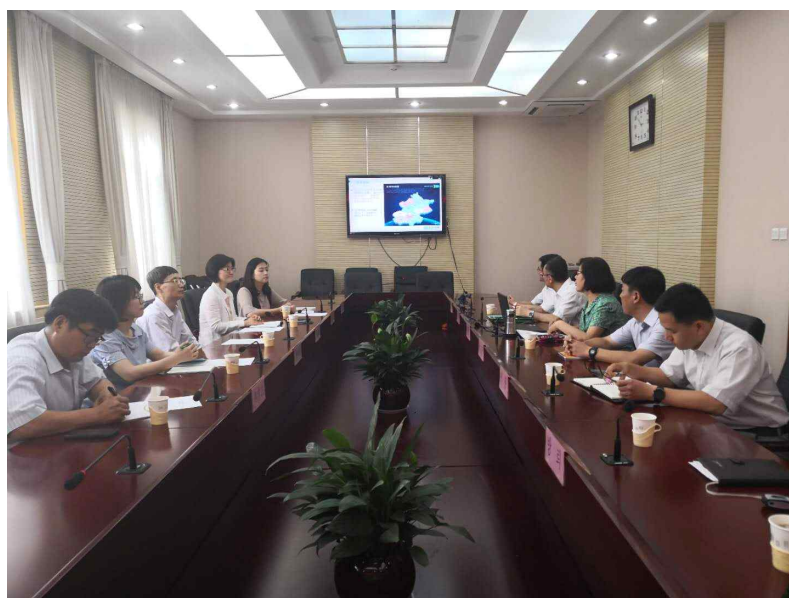
○ 2018. 6. 26.(화) 09:40 ~ 14:00 중화인민공화국사법부 행정복의사

행정심판국 심의관 임규홍	행정복의사 사장 진부지(司长 陈富智)
행정교육심판과 오애숙 사무관	처장 서운개(处长 徐运凯)
사회복지심판과 황정은 사무관	부처장 이에(副处长 李蕊)
대한민국주중대사관	국제사 부사장 원량(副司长 袁亮)
정효삼 법무협력관	담당 장해흔(张海欣)



○ 2018. 6. 26.(화) 15:00 ~ 17:00 북경시인민정부법제판공실

행정심판국 심의관 임규홍	순시원(국장급) 이영안(巡视员 李灵雁)
행정교육심판과 오애숙 사무관	복의안전관리1처장 이봉(李峰)
사회복지심판과 황정은 사무관	복의안전관리2처장 주영(周荣)
	복의응소조해지도처장 방뢰(庞雷)
	복의입안처장 왕화(王华)
대한민국주중대사관	사범부국제사 부사장 원량(袁亮)
정효삼 법무협력관	담당 장해흔(张海欣)



○ 2018. 6. 27.(수) 14:00 ~ 16:40 중국정법대학 법치정부연구원

행정심판국 심의관 임규홍	원장 왕경파(王敬波) 교수
행정교육심판과 오애숙 사무관	부교수 왕청빈(王青斌) ¹⁾
사회복지심판과 황정은 사무관	부교수 조류(曹鑒)



2. 기관방문 면담 내용

○ 2018년 국무원 조직 개편에 따라 사법부 행정복의사의 역할 및 기능의 변화가 있는지(根据2018年中国政府机构改革方案, 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行政复议司的作用和职能发生变化吗?)

국무원법제판공실 행정복의사는 국무원에 재결을 신청한 행정복의안건을 맡아 처리하고, 전국의 행정복의와 행정응소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행정복의법의 구체적 적용문제의 해석을 맡아왔다. 이번 국가기구 개혁

1) 『行政复议制度的变革与重构』(중국정법대학교출판사)의 저자

이후, (원)사법부와 (원)국무원법제판공실은 새로운 사법부를 조직했다. 새롭게 조직된 후 사법부 행정복의사는 기존의 직책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 현재 주요직책, 기구 설치의 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原国务院法制办行政复议司具体承办申请国务院裁决的行政复议案件；指导、监督全国行政复议和行政应诉工作；承办行政复议法具体应用问题的解释。此次国家机构改革以后，原司法部和原国务院法制办重新组建新的司法部。重新组建后，司法部行政复议司继续承担原有职责，目前正在研究进一步改进主要职责、机构设置的方案。

- 사법부의 법제사행정복의응소처와 북경시인민정부의 사법국법제처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在司法部法制司行政复议应诉处和北京市司法局法制处的作用和职能上有什么不同之处?)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법>에 근거하여 사법부 법제사 행정복의응소처는 성(省)급 행정기관이 피신청인인 행정복의 안건을 맡는다. 북경시 사법국 법제처는 북경시 각 구(区) 사법국이 피신청인인 행정복의 안건 및 북경시 사법국의 행정응소 안건을 맡는다.

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司法部法制司行政复议应诉处具体承办以省部级行政机关为被申请人的行政复议案件；北京市司法局法制处具体承办以北京市各区司法局为被申请人的复议案件，以及涉及北京市司法局的行政应诉案件。

- 2017년 개정된 행정복의법 제3조를 보면 행정복의업무 담당자는 국가 통일 법률직업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는데,

법률직업자격이란 무엇인지(根据2017年修改的<<行政复议法>>第3条的规定, 行政复议业务担任者通过国家统一法律职业资格考试必须取得法律职业资格, 请问法律职业资格指的是什么?)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법> 제3조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에서 행정복의에 처음 종사하는 자는 국가통일 법률직업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통일 법률직업 자격시험은 사법부에서 실시한다. 시험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사법부에서 법률직업자격증서를 발급하고, 법률직업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 자격은 중국에서 법관, 검찰관이 되고, 변호사·공증원의 개업과 최초로 맡는 법률분야 중재인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 결정심의, 행정복의, 행정재결, 법률자문에 처음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필요조건이다.

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第三条的规定, 行政机关中初次从事行政复议的人员, 应当通过国家统一法律职业资格考试取得法律职业资格。国家统一法律职业资格考试由司法部组织实施。符合报考条件的人员通过该考试后, 将由司法部颁发法律职业资格证书, 便具有了法律职业资格。该资格是在中国出任法官、出任检察官, 申请律师执业、公证员执业和初次担任法律类仲裁员, 以及行政机关中初次从事行政处罚决定深刻、行政复议、行政裁决、法律顾问的公务员的必备条件。

- 중국의 행정복의제도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中国行政复议制度以何种程序运行?)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법〉 규정에 근거하여 공민 (개인) ,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여겨지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복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복의 신청은 행정복의법에서 규정하는 행정복의 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관할권이 있는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요건 심사를 진행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행정복의사에서는 입안부서에서 요건심사를 진행한다. 복의기관이 행정복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행정기관에서 행정복의 신청을 수리하면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상황이 복잡할 경우 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고지한다. 단, 연장기한은 최대 30일로 한다. 규정상 90일 안에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복의사의 직원은 적고, 사건은 많아 어려움이 많으며,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지는 않다.

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的规定，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可以自知道该具体行政行为之日起六十日内提出行政复议申请。行政复议申请应当符合行政复议法规定的行政复议范围，并向有管辖权的行政复议机关提出。行政复议机关收到申请后，应当在五日内进行要件审查，并决定是否受理。行政复议司立案部门对要件进行审查复议机关没有受理行政复议申请的，应当书面告知申请人；复议机关受理行政复议申请的，应当在六十日内做出复议决定，情况复杂的，经复议机关负责人批准，可以适当延长，并告知申请人和被申请人，但延长期限最多不超过三十日。按照规定,90天内要处理,但实际上行政复议司的职员少,行政复议案件很多,而且不会执行。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법〉 제28조제1관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주요사실이 불명확, 증거부족, 근거 착오 등의 경우에는 행정복의기관은 해당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을 결정하거나 그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해당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취소 결정 또는 해당 구체적인 행정행위 위법 확인은 피신청인이 일정기간 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행정복의기관은 부당판단도 실시한다. 부당하다는 것의 구체적 기준은 없다.

신청인이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할 경우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변경, 위법확인 또는 피신청인이 법정 직책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第二十八条第一款第（三）项规定，具体行政行为存在主要事实不清、证据不足、使用依据错误等情形的，行政复议机关应当决定撤销、变更该具体行政行为或者确认该具体行政行为违法；决定撤销该具体行政行为或者确认该具体行政行为违法的，可以责令被申请人在一定期限内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行政复议机关实施不当判断。没有不正当的标准。

申请人对原行政行为不服提出行政复议申请时，可以针对原行政行为提出撤销、变更、确认违法或者责令被申请人履行法定职责的申请。

- 행정복의 사건의 유형은 주로 어떠한 것인지, 가장 많은 유형은 무엇인지 (申请行政复议的事件当中, 其事件的主要类型是什么样的? 最多的类型是什么?)

2017년 전국행정복의 안건은 공안, 토지, 강제철거, 노동과 사회보장,

공업상업, 식의약품, 도시농촌계획 등 7개 영역의 안전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안전의 79.13%를 차지했다. 그 중 공안 관련 안전이 가장 많고, 전체 안전의 40.49%를 차지한다.

행정복의 안전은 행정처벌, 정부정보공개, 신고처리, 행정징수, 행정부작위, 행정확인, 행정강제실시, 행정권리확립, 행정허가 등에 이른다. 그중, 행정처벌 안전이 가장 많고 전국 안전 수의 45.74%를 차지한다.

以2017年全国行政复议案件数据为例。公安、土地、房屋征补（拆迁）、劳动和社会保障、工商、食品药品、城乡规划等7个领域的案件较为集中，占案件总数的79.13%；其中公安领域案件最为集中，占案件总数的40.49%。

行政复议案件涉及行政处罚、政府信息公开、举报投诉处理、行政征收、行政不作为、行政确认、行政强制措施、行政确权、行政许可等事项。其中，行政处罚类案件最为集中，占全国案件总数的45.74%。

- 청구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지(申请人能否同时提出行政复议和行政诉讼？还是先经过行政复议才能提出行政诉讼的?)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청인이 행정복의 또는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특수 상황에서는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청인과 행정기관 사이의 천연자원 귀속 논쟁, 납세 논쟁 등이 있다.

국민들은 행정복의기관보다 법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행정복의기관들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보다 많이 얻기 위하여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사법부 행정복의사에서는 행정복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지만, 북경시에서는 주요 행정복의사건을 처리하는 데 자문을 받기 위하여 행정복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的有关规定,一般情况下,申请人可以选择提起行政复议或者行政诉讼,但不能同时提出行政复议和行政诉讼。特殊情形下,申请人应当先申请行政复议,对复议决定不服的,才可以向法院提起行政诉讼,如申请人与行政机关之间的自然资源权属争议、纳税争议等。

比起行政复议机关,国民更加信任法院,而行政复议机关为了得到更多国民的信任,正在致力于改善制度等多种努力。例如,在行政复议司没有设立行政复议委员会,北京市为咨询主要行政复议案而运营行政复议委员会。

- 행정복의사와 각급 지방정부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연간 사건처리건수 및 인용률은 어떠한지? 매년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法制司行政复议应诉处和各级地方政府受理并处理的年度案件处理件数及引用率如何? 每年的变化趋势如何?)

2017년 전국 각급 행정복의기관이 받은 행정복의 신청은 230,705건이고, 205,533건을 수리하여 193,740건을 결정했다. 그 중 취소, 변경, 위법확인과 이행명령이 28,251건이고 전체 결정의 14.58%를 차지한다.

변화추세: 2013년 이후 전국 각급 행정복의기관이 받은 행정복의 신청과 수리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직접 변경결정한 사건(취소, 변경, 위법확인과 이행명령)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7년 다소 감소했다.

以2017年统计数据为例。2017年,全国各级行政复议机关共收到行政复议

申请230705件，受理205533件，审结193740件。其中，撤销、变更、确认违法和责令履行的28251件，占审结案件的14.58%。

变化趋势：自2013年以来，全国各级行政复议机关收到行政复议申请的数量和受理的数量逐年增长，案件直接纠错率（撤销、变更、确认违法和责令履行）在2013-2016年逐年增长，2017年略有下降。

- 행정복의 사건에서 조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청인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在行政复议事件处理过程中,如何进行行政调解? 根据法律规定申请人能否主动要求行政调解?)

2007. 5. 29.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법실시조례>가 공포되고, 2007. 8. 1. 시행됨에 따라 행정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법실시조례> 제5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복의기관은 스스로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조해를 진행할 수 있다.

2007年5月29日公布《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实施条例》，2007年8月1日起施行，将行政调解列为建设。

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实施条例》第五十条规定，行政复议机关可以按照自愿、合法的原则进行调解。

- 행정복의 사건에서 조정은 어떠한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지(行政复议事件处理过程中的行政调解主要在哪些领域进行?)

공민 등이 행정청이 법률, 법규의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행정배상 또는 행정보상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조해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행정복의기관이 적극적으로 조해를 주선하지는 않는다.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行政机关行使法律、法规规定的自由裁量权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申请行政复议的；当事人之间的行政赔偿或者行政补偿纠纷。调解是由双方当事人主动主导制订的,并不是由行政复议机关主动安排调解。

○ 조정의 효력은 어떠한지(行政调解的效力如何?)

당사자가 조해를 통해 합의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조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해서에는 행정복의청구, 사실관계, 이유 및 조해결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행정복의기관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행정복의조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서명과 함께 법적 효력을 지닌다.

当事人经调解达成协议的，行政复议机关应当制作行政复议调解书。调解书应当载明行政复议请求、事实、理由和调解结果，并加盖行政复议机关印章。行政复议调解书经双方当事人签字，即具有法律效力。

○ 행정복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불복절차가 있는지(对行政复议结果不满意时,有哪些不服程序)?

행정복의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민 등이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단, 법률로써 행정복의결정을 최종재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根据行政复议法第五条的规定，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行政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照行政诉讼法的规定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但是法律规定行政复议决定为最终裁决的除外。

- 행정복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누가 되는지(对行政复议结果不服,提出行政诉讼的话被告谁? 是该行政机关还是行政复议机构或者两者?)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제26조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복의기관에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행정복의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고, 행정복의기관이 원행정기관의 행정행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복의기관을 피고로 한다. 행정복의기관이 업무적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다.

복의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원행정행위를 한 기관이 피고가 되며, 복의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는 복의기관이 피고가 된다. 행정복의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 행정복의기관이 피고가 되는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根据修改的《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第二十六条规定，经复议的案件，复议机关决定维持原行政行为的，作出原行政行为的行政机关和复议机关是共同被告；复议机关改变原行政行为的，复议机关是被告。行政复议机关在业务上承担了额外的负担。

复议机关在法定期限内未作出复议决定，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起诉原

行政行为的，作出原行政行为的行政机关是被告；起诉复议机关不作的，复议机关是被告。与行政复议案件有关,行政复议司一旦成为被告,将聘请律师担任代理人。

- 행정복의를 청구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또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국가가 그를 대신하여 대리인을 선임하고 선임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如果行政复议申请人在经济上困难或者缺乏专业知识的情况下,是否可以由行政复议机构替代申请人选拔申请人的代理人(如律师等等)并且提供选任代理人费用)?

현재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目前《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没有这方面的规定。

- 한국의 행정심판기구와 주기적인 교류(새로운 제도개선 동향, 행정심판 주요성과 등 공유 - 대면 또는 온라인을 통한 방법, 양측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방법 교환)를 진행할 의향은 있는지(是否有意与我方行政复议机构通过面对面方式或通过网络的方法进行定期的交流?(交换双方的行政复议新制度改善动向及行政复议的主要成果)?

양 측이 정기적으로 온,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교류를 할 수 있다면, 서로 진보적인 경험을 공유, 행정복의제도를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측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기대한다.

双方定期通过面对面方式或通过网络的方法进行交流，对于相互借鉴先进经验、完善行政复议制度非常有帮助，我方十分愿意建立定期交流的机制。

II

방문지역-북경[北京, Beijing] 개요

○ 개요

정식 명칭은 베이징직할시[北京直轄市], 약칭하여 '징[京]'이라고도 함. 화베이 평야[華北平野] 북쪽 끝에 있고, 동남쪽으로 보하이해[渤海]와 150km 거리

- 위치: 중국 허베이성 중앙부
- 경위도: 동경116° 23' 29" 북위39° 54' 20"
- 면적: 16,410.54km²
- 행정구분: 16구(區)* *2015년까지 14구 2현
- 행정관청 소재지: 北京市朝陽區北辰西路數字北京大廈南8層
- 꽃: 국화, 일계화
- 나무: 회화나무, 측백나무
- 인구: 21,707,000명(2017년)

○ 행정구역



Ⅲ

방문기관 개요

1. 중화인민공화국사법부(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 행정복의사(行政复议司)

- 2018년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국무원 조직개혁방안에 따라 국무원의 사법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법부와 입법 업무를 총괄하는 법제판공실이 사법부로 통합되고 법제판공실이 폐지됨
- ※ 현재 후속조치로 사법부 조직의 정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서, 구 법제판공실의 기능과 업무는 전과 다름없이 유지되고 있고, 다만 소속만 법제판공실에서 사법부로 변경된 상태임(법제판공실 행정복의사→사법부 복의사)

* 사(司): 국(국), 처(处): 과

1) 구 국무원 법제판공실

☐ 개관

총리의 법제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1954년 11월 국무원 직속기구로 국무원법제국이 설치된 후 1998년 3월 「국무원 기구설치에 관한 통지」에 따라 법제판공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주요 기능

- 법적 행정과 정부의 법치 건설에 따른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적 행정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조치와 업무 제언을 검토하고, 총리의 법제업무 협조
- 국무원 입법업무를 총괄하고, 국무원 연차 입법 업무를 입안하여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의 지도감독
- 각 부문이 국무원에 보내는 법률, 법규 초안을 심사, 중요한 외교규장과

부문연합규장의 국무원 비준, 국무원 심사를 거쳐 서명하거나 참가하는 국제 조약 업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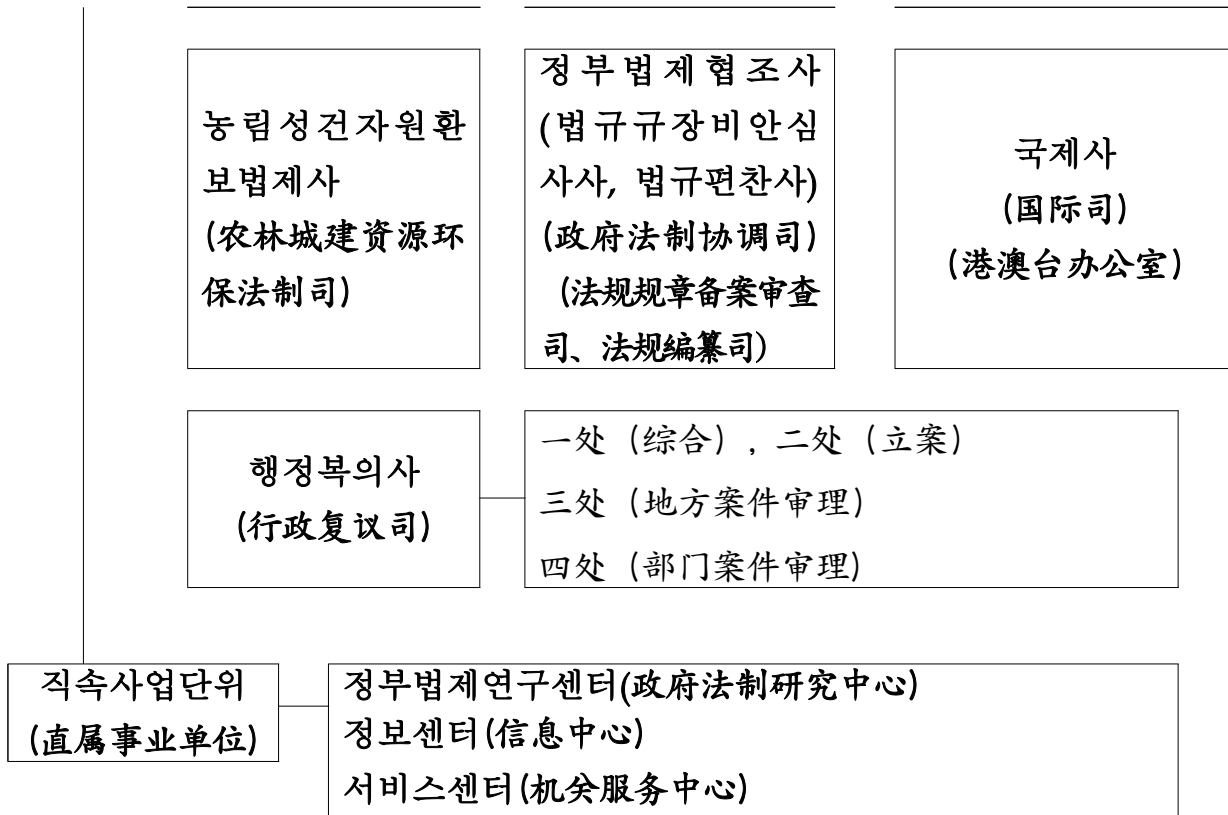
- 중요법률 초안 기초 혹은 구성. 대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법규 초안을 사회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
- 지방성법규, 지방정부규장과 국무원 부문규장의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 여부와 상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의견 제시
- 행정소송, 행정복의, 행정배상,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비용, 행정집행 등 법률연구, 행정법규 실시 및 행정법규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를 국무원에 건의하고, 제도와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을 국무원에 제출하여, 관련된 행정 법규와 문서 및 답변에 관한 의견 제출
- 행정법규의 입법 해석 업무 담당. 부문 간의 법률 시행에 관한 논쟁과 문제점을 조정, 국무원에 신청된 행정복의 안전을 처리 및 전국의 행정복의 업무의 지도·감독
- 행정법규의 정리, 편찬 및 법률, 행정법규를 편집하고 정식 판본을 편찬. 규장 정리 작업 지도. 행정법규의 외국어본 및 민족어본의 심의 및 출판
- 정부 법제 이론과 정부의 법치 업무 연구 및 홍보, 국제교류 업무 전개
- 국무원이 처리하도록 한 기타 사항 처리

- | |
|---|
| <p>(一) 调查研究依法行政和政府法制建设中出现的新情况、新问题，提出推进依法行政的具体措施和工作建议。协助总理办理法制工作事项。</p> <p>(二) 承担统筹规划国务院立法工作的责任，拟订国务院年度立法工作安排，报国务院批准后组织实施，督促指导。</p> <p>(三) 承担审查各部门报送国务院的法律法规草案，以及需要由国务院批准的重要涉外规章、部门联合规章的责任。负责从法律角度审查部门报送国务院审核的我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p> |
|---|

- (四) 负责起草或者组织起草有关重要法律草案、行政法规草案。负责对与群众利益密切相关的行政法规草案向社会公开征求意见。
- (五) 承担地方性法规、地方政府规章和国务院部门规章的备案审查责任，审查其同宪法、法律、行政法规是否抵触以及它们相互之间是否矛盾，根据不同情况提出处理意见。
- (六) 研究行政诉讼、行政复议、行政赔偿、行政处罚、行政许可、行政收费、行政执行等法律、行政法规实施以及行政执法中带有普遍性的问题，向国务院提出完善制度和解决问题的意见，拟订有关配套的行政法规、文件和答复意见。
- (七) 负责承办行政法规的立法解释工作。承担协调部门之间在法律法规实施中的争议和问题的有关工作。承办申请国务院裁决的行政复议案件，指导、监督全国的行政复议工作。
- (八) 负责及时清理、编纂行政法规，编辑国家出版的法律、行政法规汇编正式版本。指导规章清理工作。负责组织翻译、审定国家出版的行政法规外文文本和民族语言文本。
- (九) 开展政府法制理论、政府法制工作研究和宣传，开展对外法制业务交流。
- (十) 承办国务院交办的其他事项

□ 구 법제판공실 조직





2) 중화인민공화국사법부

□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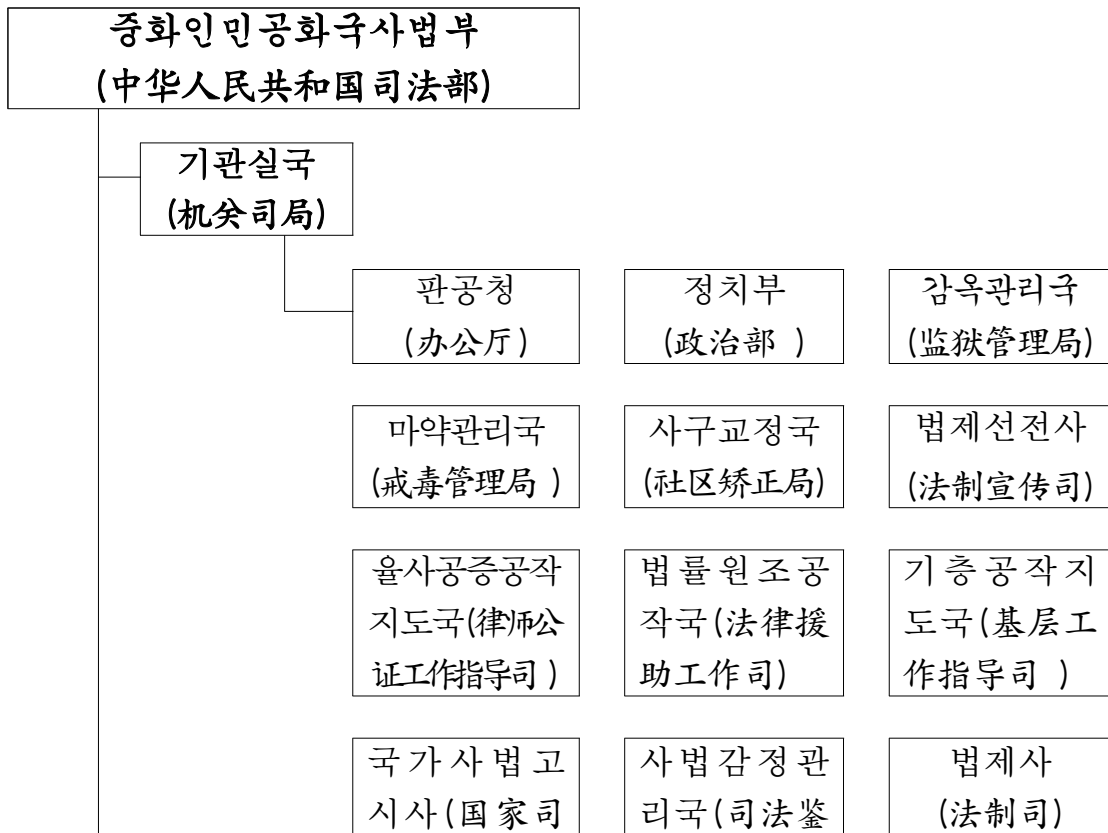
- 사법행정 업무의 방침·정책 및 법률·법규 초안 입안, 부문규장 및 사법 행정 업무의 발전 계획 제정 및 시행
- 전국 감옥의 형사 집행을 감독하고, 수형자 교화업무 감독·지도
- 사법행정시스템의 지도·감독 및 마약센터의 관리
- 국민의 법률 상식 보급 및 계획의 입안, 각 지방·업종별 법제 홍보 및 지도, 대외 법률선전 업무 지도
- 변호사·공증 업무 감독·지도, 홍콩과 마카오 지역의 변호사에 위탁한 공증사무 관리
- 법률 지원 업무의 감독·관리

- 인민의 조해, 커뮤니티 교정, 기층 법률 서비스와 연계한 기층사법소 건설 및 지도·감독
- 국가 사법 시험 계획 및 시행
- 전국 사법 감정인과 사법 감정 기구의 등록 관리 업무 총괄
- 국제 사법 협력 조약에 관한 초안 작성 및 교섭 참여, 사법 공조 조약 체결에 따른 중앙 부처의 책무 수행
- 사법 행정 시스템의 대외 교류와 협력 지도, 유엔 범죄 예방 조직과 형사 사법 분야의 교류 활동,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사법행정사무 처리
- 총기, 탄약, 복장, 경찰차량관리, 사법행정 시스템의 재무업무 지도·감독
- 전국 사법행정 시스템 육성과 사상정치업무 지도, 성·자치구·직할시와 협조하여 사법청(국)의 지도간부 관리
- 기타 국무원이 처리하도록 한 사항

- | |
|---|
| <p>(一) 拟订司法行政工作方针、政策，起草有关法律法规草案，制定部门规章，制定司法行政工作的发展规划并组织实施。</p> <p>(二) 负责全国监狱管理工作并承担相应责任，监督管理刑罚执行、改造罪犯的工作。</p> <p>(三) 负责指导、监督司法行政系统戒毒场所的管理工作。</p> <p>(四) 拟订全民普及法律常识规划并组织实施，指导各地方、各行业法制宣传、依法治理工作和对外法制宣传。</p> <p>(五) 负责指导监督律师工作、公证工作并承担相应责任，负责港澳的律师担任委托公证人的委托和管理工作。</p> <p>(六) 监督管理全国的法律援助工作。</p> <p>(七) 指导、监督基层司法所建设和人民调解、社区矫正、基层法律服务和帮教安置工作。</p> |
|---|

- (八) 组织实施国家司法考试工作。
- (九) 主管全国司法鉴定人和司法鉴定机构的登记管理工作。
- (十) 参与有关国际司法协助条约的草拟、谈判，履行司法协助条约中指定的中央机关有关职责。
- (十一) 指导司法行政系统的对外交流与合作，组织参与联合国预防犯罪组织和刑事司法领域的交流活动，承办涉港澳台的司法行政事务。
- (十二) 负责司法行政系统枪支、弹药、服装和警车管理工作，指导、监督司法行政系统计划财务工作。
- (十三) 指导、监督司法行政队伍建设和思想作风、工作作风建设，负责司法行政系统的警务管理和警务督察工作，协助省、自治区、直辖市管理司法厅（局）领导干部。
- (十四) 承办国务院交办的其他事项。

□ 사법부의 조직



法考试司)

定管理局)

국제합작국
(国际合作局)

계재장비사
(计财装备司)

기관당위
(机关党委)

은퇴휴간부국
(离退休干部局)

직속부서
(直属单位)

사법부정보센터(司法部信息中心), 사법연구소(司法研究所)
기관서비스센터(机关服务中心), 연성감옥(燕城监狱)
법률지원센터(法律援助中心), 직속매광관리국(直属煤矿管理局)
범죄예방연구소(预防犯罪研究所), 법제일보사(法制日报社)
법률출판사(法律出版社), 중화변호사협회(中华全国律师协会)
중국공증협회(中国公证协会), 중국감옥공작협회(中国监狱工作协会)
중국사법행정계독공작협회(中国司法行政戒毒工作协会)
중앙사법경찰학원(中央司法警官学院)
사법행정학원(司法行政学院), 국가사법고시센터(国家司法考试中心)
중국법률원조기금회(中国法律援助基金会)
사법협조교류센터(司法协助交流中心)
사법감정과학연구원(司法鉴定科学研究院)
중국법률복무(홍콩)유한공사(中国法律服务(香港)有限公司)
중국법률복무(마카오)공사소개(中国法律服务(澳门)公司简介)
사법부홍콩마카오대만법률훈련센터(司法部港澳台法律培训交流中心)
중화전국인민중재위원회(中华全国人民调解员协会)

□ 구 법제판공실 연도별 행정복의 처리 현황(* 철회신청은 2007년부터 각하, 화해, 조해로 변경)

	합계	철회 신청*	유지	위법 확인	취소	변경	이행 명령	조해	합의	기타
2014	123,859	9,405	73,985	2,745	6,461	555	2,656	2,116	1,148	24,788
	100%	67.32%		10.03%				22.65%		
2013	106,491	8,132	59,465	1,551	5,458	217	1,596	2,501	1,350	26,221
	100%	63.48%		8.28%				28.24%		
2012	91,974	5,056	53,032	1,119	5,298	348	1,275	2,385	1,370	22,091
	100%	63.16%		8.74%				28.10%		
2011	84,387	5,097	49,941	898	4,910	454	919	1,697	1,265	19,206
	100%	65.22%		8.51%				26.27%		
2010	77,606	3,755	46,615	459	4,998	377	640	1,928	1,416	18,418
	100%	63.62%		8.34%				28.04%		
2009	64,688	2,360	40,234	572	4,403	413	520	1,461	869	13,836
	100%	65.87%		9.13%				25.0%		
2008	66,479	1,918	41,027	383	4,953	509	379	1,259	1,418	14,633
	100%	64.60%		9.36%				26.04%		
2007	72,747	1,177	44,044	841	5,748	1,130	370	962	850	17,625
	100%	62.16%		11.12%				26.72%		
2006	72,029	13,627	43,645	560	8,014	1,336	656			4,191
	100%	79.51%		14.67%				5.82%		
2005	70,095	13,020	41,732	527	9,107	1,606	700			3,403
	100%	78.11%		17.03%				4.86%		
2004	64,953	11,750	37,726	407	9,527	1,741	557			3,245
	100%	76.17%		18.83%				5.0%		
2003	62,189	11,905	34,644	406	9,958	2,283	659			2,334
	100%	74.85%		21.40%				3.75%		
2002	62,609	11,049	34,900	550	9,287	2,515	612			3,696
	100%	73.39%		20.71%				5.90%		

2001	68,309	11,700	36,682	325	11,248	3,415	551			4,388
	100%	70.83%		22.75%				6.42%		
2000	62,693	10,813	32,748	296	11,560	3,410	622			3,244
	100%	69.49%		25.34%				5.17%		
1999	32,170									
	100%									

* 2017년 약 20만여건

* 표 출처: 김연, ‘중국행정부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한국 행정복의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년

2. 북경시인민정부법제판공실(北京市人民政府法制办公室)

□ 연혁

- 1982년 5월 정부의 법제업무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시정부조사연구실(市政府调查研究室)에 법규팀(法规组) 설치
- 1983년 3월 법규팀을 법규처(法规处)로 변경
- 1984. 7. 12. 시정부조사연구실법규처를 기초로 북경시경제법규연구센터(北京市经济法规研究中心)를 설치하고, 관련부서 파견자로 간사회를 구성, 사무소를 시정부조사연구실법규처에 설치. 담당자 2명, 상무간사 17명, 판공실주임 1명
- 1985. 4. 5. 국급(局级)의 북경시인민정부법규센터(北京市人民政府法规中心)로 개칭
 - 1985. 6. 3. 북경시인민정부법규센터 판공실과 시정부 판공청법제처 통합
- 1987. 6. 16. 북경시인민정부법제공작판공실(北京市人民政府法制工作办公室) 개칭

- 1995. 7. 12. 현재 명칭(北京市人民政府法制办公室)으로 변경
(6처) 비서처(인사처), 경제처, 성건처, 사회처, 감독처, 복의처] 설치
- 2009. 8. 8. (9처) 비서처(인사처), 종합처, 법제1처, 법제2처, 법제3처, 규범성문건심사처, 집법감독지도처, 복의안전관리처, 복의응소지도처(북경시인민정부행정복의접대실, 복의입안심사처) 설치

□ 소관업무

- 법에 의거한 행정의 총괄 계획, 종합적 협조, 지도감독, 정책 연구, 상황 교류와 교육 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법에 의거한 행정과 정부의 법제 건설에 관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연구하여 법적인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추진
- 시정부 입법 업무의 총괄 계획 수립, 종합 조해 책임, 시정부 입법 업무 계획과 연도 계획을 수립, 비준 후 시행 및 지도
- 시정부 업무부문의 심사, 지방성 법규 초안 및 정부규장 초안에 대한 심의, 중요한 지방성 법규 초안의 기초 또는 구성, 시정부가 심사한 지방성 법규 초안 및 정부규장 초안의 사회공개 및 의견조회, 정부규장의 입법해석과 지방성 법규 규정의 시정부 책무에 대한 해석, 국가법률 초안 및 행정법규 초안의 구성 및 의견조회와 관련된 업무
- 시정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위한 법률적 의견 제공, 시정부 또는 시정부 판공청 명의를 규범성 문건의 제정 및 발의, 시정부의 심의 요청 및 시정부가 심사한 법률문제 관련 문건이나 사항의 합법성 심의업무, 구·현 정부와 시정부 업무부문에 제정된 행정 규범성 문건의 심사, 상황에 따른

처리 의견 및 건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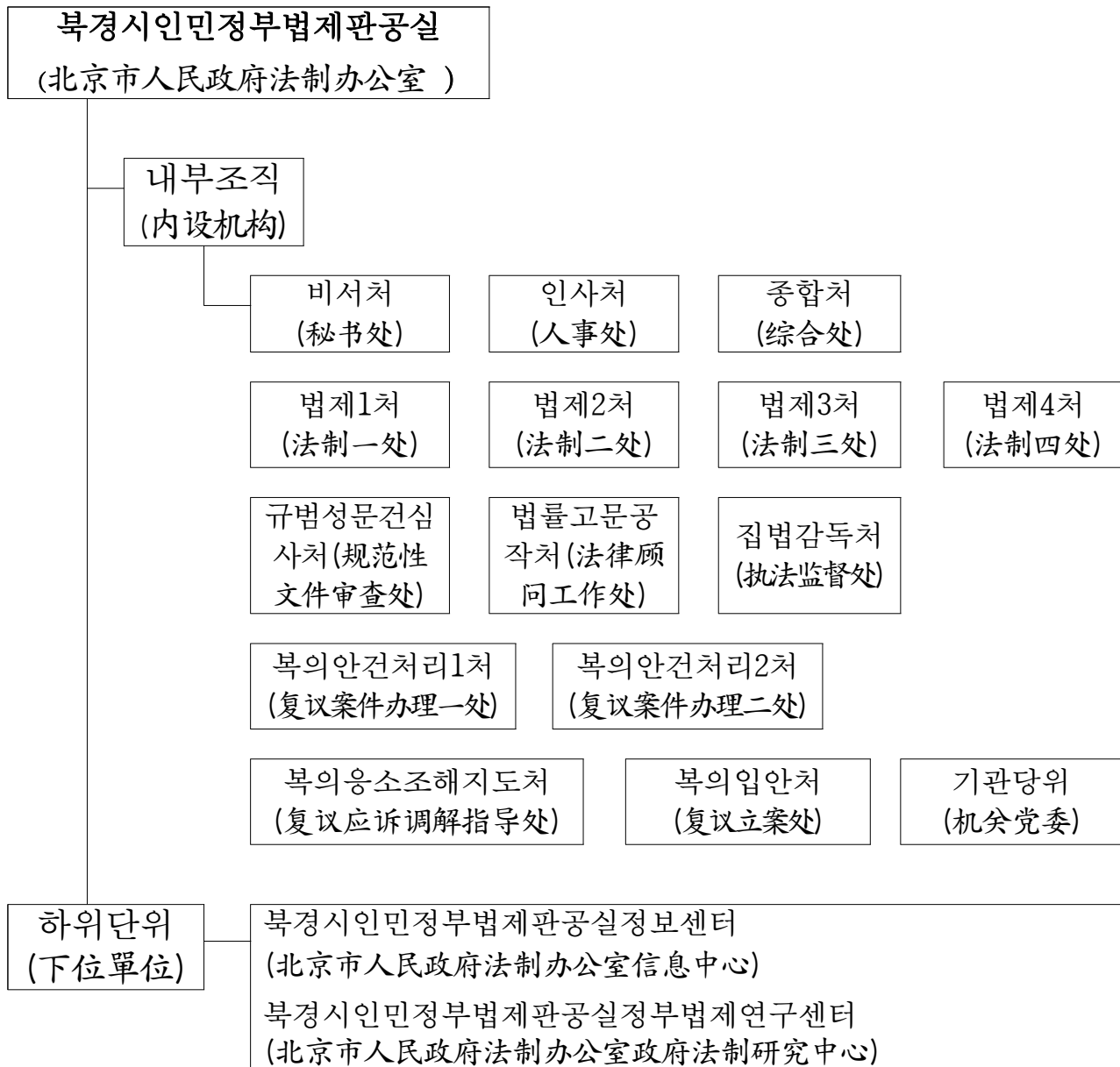
- 국가의 중요한 법률, 법규 방안이나 의견 연구 및 제출, 정부 행위의 공동 규범에 관한 법률, 법규와 규장의 실시 및 행정 집행 시 보편적인 문제 연구, 시정부에 대한 제도 보완 및 해결문제 의견 제시, 시정부 업무 부문에서 실시되는 법률, 법규, 규장 중에 논쟁과 문제
- 본 시 행정법 집행의 감독과 지도, 행정법 집행의 주체 자격과 행정 허가 사항의 심사 및 확인, 시정부의 업무 안배에 따라 법률, 법규, 규장에 대한 검사와 관련 평가 작업 실시, 행정집행 책임제와 행정집행 대오의 법제 건설 지도 및 추진, 시정부가 처리한 행정 처분 결정의 심사와 시정부가 결정한 중대한 행정 처벌의 청문 업무 처리
- 시정부의 행정복의, 행정배상 사건의 처리, 시정부의 행정소송의 응소대리업무와 국무원이 재결한 행정복의 사건 관련 업무, 행정복의 관할 쟁의 사항에 대한 협조, 전 시 행정복의, 응소 업무의 지도와 감독, 본 시 행정조해 업무의 포괄적인 조해, 감독지조, 시정부의 행정복의에 대한 일상 업무 처리
- 본 시정부 규장 공포, 등록, 정리 및 편찬 업무, 지방성 법규, 정부규장 데이터베이스의 홍보 관리, 지방성 법규집, 정부규장집의 편집, 정부 규장의 번역 및 심의
- 구·현 정부와 시정부 업무 부문 및 그 법제기구의 법제건설의 지도, 본 시 행정처벌, 행정복의, 행정배상, 행정소송 등 통계 업무, 정부 법제 연구와 홍보, 대외법제업무 교류 확대
- 시정부가 처리하도록 한 기타 사항 처리

(一) 负责本市推进依法行政的统筹规划、综合协调、督促指导、政策研究、情况交流和培训考核等工作；调查研究依法行政和政府法制建设中的新情况、新问题，提出推进依
--

法行政的具体措施和工作建议。

- (二) 承担市政府立法工作的统筹规划、综合协调的责任，拟订市政府立法工作规划和年度计划，报市政府批准后组织实施并督促指导。
- (三) 承担审查市政府工作部门报送市政府审议的地方性法规草案、政府规章草案的责任；负责起草或者组织起草重要地方性法规草案、政府规章草案；负责对市政府审查的地方性法规草案、政府规章草案向社会公开征求意见；承办政府规章的立法解释和地方性法规规定由市政府负责的应用性解释工作；组织承办国家法律草案、行政法规草案征求意见的有关工作。
- (四) 负责为市政府重要决策提供法律意见；承办以市政府或市政府办公厅名义制发的规范性文件、报请市政府会议审议和市政府审批的涉及法律问题的有关文件或事项的合法性审核工作；承担区县政府和市政府工作部门制定的行政规范性文件的备案审查责任，根据不同情况提出处理意见或建议。
- (五) 研究提出实施国家重要法律法规的方案或意见；研究涉及政府行为共同规范的法律、法规和规章实施以及行政执法中带有普遍性的问题，向市政府提出完善制度和解决问题的意见；协调市政府工作部门在实施法律、法规和规章中的争议和问题。
- (六) 负责本市行政执法监督和指导；审查、确认行政执法主体资格和行政许可事项；根据市政府的工作安排，组织开展实施法律、法规、规章情况的检查和有关评估工作；指导、推进行政执法责任制和行政执法队伍法制建设；承办市政府交办的行政处罚决定的审查和市政府决定的重大行政处罚的听证工作。
- (七) 承办市政府行政复议、行政赔偿案件；组织、承办市政府行政诉讼的应诉代理工作和由国务院裁决的行政复议案件的有关工作；协调解决行政复议管辖争议事项；指导、监督全市行政复议、应诉工作；承担本市行政调解工作的统筹协调、监督指导；承担市政府行政复议接待的日常工作。
- (八) 负责本市政府规章公布、备案、清理、编纂工作；负责地方性法规、政府规章数据库的信息管理，编辑出版地方性法规、政府规章汇编；组织翻译、审定政府规章的外文译本。
- (九) 负责指导区县政府和市政府工作部门及其法制机构的法制建设；负责本市行政处罚、行政复议、行政赔偿、行政诉讼等统计工作；开展政府法制理论、政府法制工作研究和宣传，开展对外法制业务交流。
- (十) 承办市政府交办的其他事项。

□ 조직구성



○ 복의안전처리1처(复议案件办理一处)

시정부 부서 업무에 대한 행정복의사건, 행정배상사건 처리; 행정 복의 신청자의 관련 규정에 관한 심의 신청 처리; 행정복의, 행정배상 법률제도의 실시
에 관한 문제 연구

○ 복의안전처리2처(复议案件办理二处)

시정부에 제출된 시정부, 구헌정부에 대한 행정복의사건, 행정배상사건의 처

리; 행정 복의 신청자의 관련 규정에 관한 심의 신청 처리;시정부 행정소송사건의 응소대리 및 국무원이 재결한 시정부 행정복의사건에 관련된 업무 처리; 행정복의, 행정배상 법률제도의 실시에 관한 문제 연구

○ 복의응소조해지도처(复议应诉调解指导处)

시의 행정복의, 응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복의, 응소 업무의 종합연구, 제도 강화와 정보 통계 분석 업무담당; 중요 행정복의 결정의 기록 업무; 행정복의, 응소 자의 자격관리와 훈련 업무; 북경시인민정부행정복의위원회 사무국 업무 담당; 구(현)인민정부행정복의위원회 시범사업 추진; 시의 행정조해 업무의 총괄 조해 및 지도·감독, 평가 및 교육, 통계 분석; 행정조해 제도 강화 및 행정조해, 국조해 및 사법조해의 협조 체제 수립

○ 복의입안처(复议立案处) (北京市人民政府行政复议接待室)

시정부 행정복의 접수 및 자문; 시 정부에 제출된 행정복의 신청의 입안심사와 안전 조해업무; 본 시의 행정복의 접수 및 입안심사와 관련된 정보의 통계 업무

□ 북경시 행정조해제도

○ 2007년 전국 최초로 북경시하이톈구(海淀区)정부에 행정쟁의조해센터(行政争议调处中心)가 설치

- 설치 후 6개월 만에 47건의 행정쟁의 안건을 접수해 23건을 해결

○ 2008년 9월 북경시공상국(北京市工商局)에 합동 행정조해소, 시청구(西城区) 15개 의류 도매 시장과 대형 마트 내에 행정조해소 설치

○ 2009년 4월 북경시지세국(北京市地税局)은 세무행정복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 2009년 7월, 2010년 9월 북경시 방산구공상분국(房山区工商分局)과 평곡구공상분국(平谷区工商分局)는 각각 경제합동쟁의조해센터(济合同争议调解中

心), 소비분규행정조해센터(消费纠纷行政调解中心) 설치

- 2010년 12월 북경시위판공청(北京市委办公厅)과 시정부판공청(市政府办公厅) 《사회모순의 다원적 조해체계 구축에 관한 의견(关于构建社会矛盾多元调解体系的意见)》을 제출하여 인민조해, 행정조해와 사법조해를 포함한 대조해 구성을 제안
- 2011년 5월 북경시정부는 《행정조해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行政调解工作的意见)》을 제출하여 행정조해 원칙, 대상 범위, 처리절차, 처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조해의 규범화, 제도화 실현
- 2015년 5월 《북경시행정조해판법(北京市行政调解办法)》을 제정하여 9월부터 시행
- 2017년 10월 연경구(延庆区)정부법제판공실은 《북경시연경구행정조해위원회시범실시 방안(北京市延庆区行政调解委员会试点 方案)》을 마련하고, 연경공안분국(延庆公安分局)과 위계위(卫计委)에 행정조해위원회 시범 설치
- 2017. 12. 25. 북경시창평구(昌平区)행정조해위원회 및 행정조해협회 설립
- 2017년 전(全) 구의 민사분쟁 699건 행정조해를 통해 561건 성공하여 성공률 80.3%
- ※ 2017년 전시 각급행정기관이 수리한 행정조해사건 832,474건 중 306,085건이 해결되어 조해성공률 36.8%를 기록
 - 동 행정조해사건은 법제판공실의 행정복의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북경시 행정복의 연도별 접수·처리

구 분	접수	처리결과											기 타
		합계	기각	각하	위법 확인	취소	변경	이행 명령	조해	종결			
										철회 신청	화해 합의	기타	
계	31917	25471	16355	2812	366	1332	14	324	5	3680	106	23	454
2012	3587	2636	1651	279	13	50	0	31		547	1	14	50

2013	4968	3619	2408	317	26	80	0	50		499	2	5	232
2014	8093	5488	4049	547	35	136	1	62	0	600	54	2	2
2015	7616	6370	4516	544	75	414	6	73	5	678	45	0	14
2016	7653	7358	3731	1125	217	652	7	108		1356	4	2	156
2017	7983	7724	4381	923	159	612		131			599	864	55

○ 분야별 접수처리현황

연도	계	행정 처벌 行政 处罚	정보 공개 信息 公开	부작위 行政 不作为	행정 허가 行政 许可	행정 강제 行政 强制	권리 확정 行政 确权	행정 징수 行政 征收	행정 확인 行政 确认	고소 고발 举报 投诉	기타 其他
2012 (%)	3587	976 (27.2)	682 (19.0)	407 (11.4)	281 (7.8)	235 (6.6)	106 (3.0)	105 (2.9)	66 (1.8)	- -	729 (20.3)
2013 (%)	4968	1,319 (26.6)	1,716 (34.5)	477 (9.6)	284 (5.7)	155 (3.1)	160 (3.2)	146 (2.9)	77 (1.5)	- -	634 (12.9)
2014 (%)	8093	2,691 (33.2)	2,170 (26.8)	921 (11.5)	391 (4.8)	291 (3.6)	200 (2.5)	84 (1.0)	2 (0.02)	- -	1,343 (16.6)
2015 (%)	7616	2,703 (35.5)	1,703 (22.4)	389 (5.1)	241 (3.2)	175 (2.3)	129 (1.7)	78 (1.0)	4 (0.05)	- -	2,194 (28.8)
2016 (%)	7653	2,265 (29.6)	1,913 (24.9)	762 (9.9)	259 (3.4)	328 (4.3)	89 (1.2)	189 (2.5)	220 (2.9)	1,092 (14.3)	536 (7.0)
2017 (%)	7983	2,667 (33.4)	1,253 (15.7)	1,009 (12.6)	88 (1.1)	323 (4.0)	50 (0.6)	243 (3.0)	173 (2.0)	1,472 (18.4)	705 (8.8)

3. 중국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설립

- 1952년 정부의 고등교육 조정정책에 의거 베이징대학(北京大学), 연징대학(燕京大学, 연경대학), 푸런대학(辅仁大学, 보인대학), 칭화대학(清华大学, 칭화대학)의 법학(法学), 정치학(政治学), 사회학(社会学) 등의 학과를 기반으로 한 합병을 통해 베이징정법학원(北京政法学院)으로 설립된 공립대학
- 1983년 현재의 교명으로 개칭하여 북경 시내 2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학생은 2만여 명에 달함

□ 설치 학과

- 법학원, 민상경제법학원, 국제법학원, 형사사법학원, 정치 및 공공관리학원, 상학원, 인문학원, 외국어학원, 사회학원, 마르크스주의학원, 법률석사학원, 사업고시학원, 성인교육학원, 국제교육학원, 과학기술교학부 등 19개 단과학원 및 부로 구성되어 있고, 16개 본과(학부)전공, 45개 석사전공, 18개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중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법학계열 학과가 개설된 대학임

□ 법치정부연구원

- 법정대학 직속의 연구원으로 헌법과 행정법에 관한 이론 및 실제 연구 중점센터
- 헌법과 행정법 분야의 연구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교수 18명, 박사 16, 석사 25명
- 2005년부터 30여 가지 이상의 학술 연구를 발표하고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

1. 행정복의제도의 근거법령

1) 근거법령

-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법(中華人民共和國行政復議法)(‘행정복의법’)
-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법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行政復議法實施條例)
(‘실시조례’)

2) 행정복의법 입법 경위

- 중국의 행정구제 입법으로는 행정소송법(1989. 4. 4. 시행)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1990. 12. 24.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조례(中華人民共和國行政復議條例)를 제정하여 1991. 1. 1. 시행
- 1999. 10. 1. 정식입법인 총 7장 43조 행정복의법 제정·시행
 - 1차 개정: 2007. 8. 27.
 - * 제30조 ‘征用’을 ‘征收’로 수정
 - 2차 개정: 2017. 9. 1
 - * 제3조에 행정복의 담당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가통일 법률직업 자격시험에서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도록 신설
- 2007. 5. 27. 실시조례 제정

○ 행정복의법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행정복의의 범위
- 제 3 장 행정복의의 신청
- 제 4 장 행정복의의 수리
- 제 5 장 행정복의의 결정
- 제 6 장 법률적 책임
- 제 7 장 부 칙

실시조례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행정복의의 신청
- 제 3 장 행정복의의 수리
- 제 4 장 행정복의의 결정
- 제 5 장 행정복의의 지도 및 감독
- 제 6 장 법률적 책임
- 제 7 장 부 칙

2. 행정복의제도의 주요 내용

1) 행정복의의 목적(행정복의법 제1조)

위법하거나 부당한 구체적 행정행위로 인하여 개별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를 시정 및 방지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 직권을 사용하는 것을 관리감독하고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법을 제

<행정심판의 목적>(행정심판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

2) 행정복의의 기본원칙(행정복의법 제4조)

□ 합법 원칙: 행정복의의 내용 및 절차는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

○ 행정복의 주체의 합법성: 해당 사건에 대해 행정복의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향유하고 있는 기관이 그 직책범위 내에서 행정복의를 진행

○ 절차의 합법성: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순서 및 형식에 부합하게 행정복의를 진행

○ 근거의 합법성: 법률, 법규, 규장 및 상급 행정기관의 규범성 문건만을²⁾ 행정복의의 판단근거로 함

□ 공정 원칙

행정복의기관에서 행정복의 사건을 처리할 때, 어느 한 당사자 일방을 두

2) 규범성문건: 행정기관 또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 조직이 법정 권한 범위안에서 제정한 결정, 명령등과 같은 행위규칙으로 행정법규와 규장 이외의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결정, 명령, 지시, 행정조치 등의 명칭을 가지는 문건으로서 「국가행정기관공문처리판법」에서는 명령, 결정, 지시, 공고, 통고, 통지, 통보, 보고, 청시(請示), 비복(批復), 함(函), 회의기요(會議記要) 등의 명칭으로 예시되고 있음

둔하지 않고 공정하게 쌍방 당사자를 대하여야 함

☐ 공개 원칙

행정복의의 전반 절차는 국가기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영업비밀이 아닌 한 당사자와 사회에 공개하여야 함

☐ 즉시 원칙(효율 원칙)

행정복의의 신청을 즉시 수리해야 하고, 규정된 심리기한 내에 사건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이 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복의기관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 편민(便民) 원칙

행정복의 과정에서 최대한 행정복의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당사자가 행정복의에 참여한 목적을 실현가능하도록 확보하는 원칙

3) 행정복의의 대상(혼합식방법으로 규정)(행정복의법 제4조)

☐ 개괄적 대상(행정복의법 제2조)

공민 등은 어떠한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경우,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음

☐ 구체적 행정행위(행정복의법 제6조)

- ① 행정기관의 경고,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재산 몰수, 생산중지 명령, 허가증의 정지 및 취소, 면허의 정지 및 취소, 행정구류 등과 같은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 ② 행정기관이 행한 개인의 인신자유(人身自由)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재산의 차압, 압류, 동결 등과 같은 행정강제조치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③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증, 면허증, 자질증(资质证), 자격증 등³⁾ 증서의 변

경, 정지 및 취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④ 행정기관이 행한 토지, 광산, 수류, 삼림, 산령, 초원, 황무지, 간석지, 해역 등 자연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⑤ 행정기관이 합법적인 경영자율권을⁴⁾ 침해했다고 여길 경우
- ⑥ 행정기관이 행한 농업 도급계약의⁵⁾ 변경이나 폐지로 인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여길 경우
- ⑦ 행정기관이 불법자금모금, 재물징수, 비용할당 및 기타 의무이행의 요구가 위법하다고 여길 경우
- ⑧ 법정 조건을 구비하였다고 여겨, 행정기관에 허가증, 면허증, 자질증, 자격증 등 증서를 신청하였거나, 행정기관에 관련 사항의 심사비준 또는 등기를 해줄 것을 신청하였지만 행정기관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 ⑨ 행정기관에게 인신권, 재산권, 및 교육 받을 권리의 보호에 관한 법정직책의 이행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 ⑩ 행정기관에 법에서 정한 보상금(抚恤金), 사회보험금, 최저 생활보장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⑪ 행정기관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여길 때

3) 자격증과 자질증은 일정한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로서 자격증은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자질증은 개인이 아닌 법인과 기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

4) 경영자율권이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단체가 국가의 간섭이 없는 전제하에서, 자체절로 인력, 물력, 재력을 안배하여, 자율적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영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기업을 합병 또는 분리하는 것, 강제적으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

5) 농업 도급계약이란, 농촌집체조직과 농민이 체결한 집체토지, 생산수단 및 기타 재산의 경영 및 도급에 관한 계약으로써, 계약의 내용에 의해 도급운영을 하는 농민들은 집체토지에 대한 경영권,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수익권을 갖게 된다. 이론상 행정기관은 농업생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계약의 이행을 도촉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자체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농업 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간섭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종종 침해한다. 예컨대, 도시건설의 확장을 위해,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업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의 대상>(행정심판법 제3조)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추상적 행정행위(행정복의법 제7조)

- ① 공민 등은 행정기관이 행한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정이 위법하다고 여길 때,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복의의 신청과 함께 행정규정(국무원 부서의 규정,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행정부서의 규정, 향·진 인민정부의 규정)에 대한 심사도 병행할 수 있음
- ② 국무원 각 부, 위원회 및 지방 인민정부의 규장(規章)을 포함하지 않으며, 규장들에 대한 심사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의해 처리해야 함

※ 중국의 법령체계 이해

체 계 도	입 법 기 구	비 고
헌법 (constitution)	•전국인민대표대회 (약칭 ‘전인대’)	헌법 제62조
↓		
기본법률(act) 기타법률(act)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헌법 제62조 헌법 제67조
↓		
행정법규 (decree)	•국무원	헌법 제89조 ※ 조례, 세칙, 규정, 결정, 판법, 통지, 해석 등 으로 표현됨 ※ 우리나라 시행령에 해당

↓			
규장(規章)	•규장 : 각부, 각위원회	규장(헌법 제90조) (부문규정이라고도 함) ※ 실시세칙, 규정, 통지, 설 명, 의견 등의 명칭 사용 ※ 우리나라 시행규칙에 해당	•양 규정 충돌 시 :법원이 하나의 규범을 당해 사 건에서만 배제
지방성법규 (regulate)	•지방성법규 : 지방인민 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지방성법규 (헌법 제100조) ※ 우리나라 조례에 해당	

↓			
지방정부 규장(규정)	•각 지방정부	‘지방정부규정’ 이라고도 하며, 명칭은 부 문규정과 유사 ※ 우리나라 규칙에 해당	

* 표 출처 : 김민호, ‘중국 행정쟁송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 2006년 5월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행정심판법 제59조)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조례·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복의 배제(행정복의법 제8조)

- ①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 혹은 기타 인사 처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 제기
- ②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에 관하여 내린 조해 혹은 기타 처리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4) 행정복의 담당기관과 관할

□ 행정복의 담당자

- 2017. 9. 1. 행정복의법 제2차 수정에 따라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에서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행정복의 업무 수행이 가능(행정복의법 제3조제2관)

※ 법률 개정 전 이미 행정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일급복의제도(一級复议制度)

-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행정기관의 차상위 기관에 행정복의를 청구하는 것을 말함
- 다만, 행정복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다시 상위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소송을 통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복의 담당기관: 보통 해당 행정행위를 한 기관의 상위 기관이 담당

- ①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각 부서의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소속 인민정부나 상급 주관부서 중 선택하여 행정복의를 청구. 세관(海關), 금융, 국세, 외환관리 등 국가가 수직적 관리를 하는 행정기관과 국가 안전기관의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는 반드시 상급 주관 부서가 행정복의를 관할(행정복의법 제12조).
- ② 지방 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는 상급 인민정부가 행정복의를 담당. 성이나 자치구가 법률에 의거 설립한 파출(派出) 기관에 속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파출기관이 행정복의의 권한을 가짐(행정복의법 제13조)
- ③ 국무원 각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에 직접 행정복의를 청구(행정복의법 제14조)

- ④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파출기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이를 설립한 행정기관이, 정부 부처가 설립한 파출기관의 행정행위의 불복하는 경우는 이를 설립한 행정기관이나 동급의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관련법률에 의해 행정권을 위임받은 조직의 경우 해당조직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정부나 부처 혹은 국무원 부서가,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공동명의로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는 두 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이 해체된 경우 직권을 계수받은 행정기관이 행정복의를 관할(행정복의법 제15조)

□ 행정복의 종국재결제도

- 정의: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한 후에 해당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이 종국성을 갖고, 당사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제도

○ 종국재결의 유형

- ① 선택적 종국재결(행정복의법 제14조): 행정상대인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국무원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단 행정복의를 선택하면 행정복의는 종국적인 것이고, 다시 사법구제를 받을 수 없음
- ② 명시적 종국재결(행정복의법 제30조): 행정상대인은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단지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그 행정심판의 재결이 종국재결임

5) 행정복의의 절차

□ 행정복의 신청

○ 신청기한(행정복의법 제9조)

- ① 공민 등이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여길 경우, 그 구체적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함

- ② 타 법률에서 신청기한을 60일을 초과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에 따름
 * ‘타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협의의 법률만을 말함
- ③ 불가항력 혹은 기타의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법정 신청 기한이 지체된 경우, 신청기한은 장애 요소가 소멸된 날부터 다시 계산

○ 신청기간의 기산점(실시조례 제15조)

- ① 즉석에서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였을 때, 그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신청기한을 계산
- ② 구체적 행정행위를 기록한 법률문서를 직접 송달했을 때, 피송달인이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신청기한을 계산
- ③ 구체적 행정행위를 기록한 법률문서를 우편으로 송달했을 때, 피송달인이 우편의 수취증(签收单)상의 수령일로부터 신청기한을 계산하며, 수취증이 없는 경우 도달증명서(送达回执)에 사인한 날부터 신청기한을 계산.
- ④ 구체적 행정행위를 공고의 형식으로 피송달인에게 고지할 때, 공고기한이 끝난 날부터 신청기한을 계산.
- ⑤ 행정기관에서 구체적 행정행위를 할 당시 공민 등에게 고지하지 않고 사후에 고지를 보충했을 때, 공민 등이 보충고지를 받은 날부터 신청기한을 계산
- ⑥ 만약 피신청인이 공민 등이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알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증명자료에서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았다고 증명된 날로부터 신청기한을 계산

○ 부작위에 대한 신청기간의 기산점(실시조례 제16조)

- ① 이행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이행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신청기한을 계산
- ② 이행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공민 등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도과한 후 행정부위의 신청기한을 계산

○ 신청방법(실시조례 제15조)

- ① 서면신청과 구두신청이 모두 가능. 다만 구두로 신청할 경우 행정복지기관은 반드시 당장에서 신청인의 기본정보, 행정부위의 청구, 대상사실 및 이유, 시간을 기재해야 하며, 즉석에서 그 기재내용을 신청인에게 읽어준 후 신청인의 확인사인을 받아야 함(행정복지법 제11조)
- ② 서면신청의 형식으로 직접제출, 우편제출, 팩스제출 등이 모두 가능하고, 행정복지기구의 조건이 허락할 경우 이메일을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실시조례 제18조)

□ 대리인

- 신청인과 제3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행정복지에 대리참가를 위탁할 수 있고(행정복지법 제10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행정복지기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변호사에 의한 행정복지의 대리는 허용되고 있지 않음(*행정소송의 경우에 변호사에 의한 대리가능)

<대리인>(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제30조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은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이 서로 대리책임을 미루는 것은 인민법원이 그 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 소송을 대리한다.

제31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아래 열거한 1 내지 2명에게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 (1) 변호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 (3) 당사자가 속한 지역, 단위 및 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시민들

제32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조직과 공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 국가 기밀과 상업 비밀, 개인의 비밀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비밀에 부쳐야 한다.

第三十条 没有诉讼行为能力的公民，由其法定代理人代为诉讼。法定代理人互相推诿代理责任的，由人民法院指定其中一人代为诉讼。

第三十一条 当事人、法定代理人，可以委托一至二人作为诉讼代理人。

下列人员可以被委托为诉讼代理人：

- (一) 律师、基层法律服务工作者；
- (二) 当事人的近亲属或者工作人员；
- (三) 当事人所在社区、单位以及有关社会团体推荐的公民。

第三十二条 代理诉讼的律师，有权按照规定查阅、复制本案有关材料，有权向有关组织和公民调查，收集与本案有关的证据。对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材料，应当依照法律规定保密。

当事人和其他诉讼代理人有权按照规定查阅、复制本案庭审材料，但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内容除外。

□ 행정복의 수리

○ 수리 여부의 결정

- 행정복의의 신청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행정복의법 제17조)
- 수리 조건(실시조례 제28조)
 - ① 명확한 신청인과 규정에 부합되는 피신청인이 있을 것
 - ② 신청인과 구체적 행정행위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 ③ 구체적인 행정부위의 청구와 이유가 있을 것
 - ④ 법정기한 내에 신청할 것

- ⑤ 신청한 대상행위가 행정부위의 범위에 속할 것
- ⑥ 신청을 접수한 행정기관이 행정부위의기관으로서의 직책이 있을 것
- ⑦ 동일한 사건에 대해 기타 행정기관의 수리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없을 것
- ※ 행정복의가 수리되면 신청인은 동일한 사유로 행정복의 기간 내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행정복의의 심리

○ 심리방식 및 심리기한

- 서면심사가 원칙이고, 신청인이 요구하거나 행정복의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된 조직이나 인원에게 대해 조사를 진행하거나 신청인, 피신청인, 제3자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행정복의법 제22조)
-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일 경우, 신청인의 요구나 행정부위의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공청회를 통한 심사를 할 수 있음(실시조례 33조)
- 심리기한은 행정복의기관이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기타 법률에서의 행정복의 심리기한을 60일보다 짧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사건이 복잡한 경우 복의기관의 책임자 비준을 거쳐 심리기한을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행정복의법 제31조))

○ 심리절차(행정복의법 제23조)

- 행정복의 기관은 행정복의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복의 신청서 부분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피신청인은 행정복의 신청서 부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회답과 함께 분쟁의 대상인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게 된 증거, 근거 및 기타 자료를 복의기관에 제출해야 함
-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행정 부위의 신청근거를 비롯한 서류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위의 증거문서에 근거하여, 청구된 행정복의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림

6) 행정복의 결정 종류(행정복의법 제28조)

☐ 유지결정

인정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증거가 확실하며, 적용한 근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그 내용이 타당할 때 구체적 행정행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써, 피신청인이 행한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반면 신청인의 행정복의 청구를 거부하는 결정.

☐ 이행결정

피신청인이 법정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일정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결정

☐ 취소, 변경 혹은 확인

○ 행정행위의 위법함을 취소하거나 혹은 확인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① 주요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② 적용한 근거에 착오가 있는 경우
- ③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경우
- ④ 직권을 월권 혹은 남용한 경우
- ⑤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뚜렷하게 부당한 경우

○ 피신청인이 서면 답변서와 당초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증거 및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구체적 행정행위는 증거 및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결정을 내림

☐ 각하결정

각하결정은 실무상 주로 사용되는 결정 종류의 하나이나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의법상 열거되고 있지 않음

□ 행정복의 조정(조해)제도

- 행정기관이 행한 재량행위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한 때,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행정복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자원하여 합의한 경우, 서면으로 된 합의서를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복의기관은 합의서가 사회공공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해가 되지 않을 경우 응당 허락해야 함(실시조례 제40조)
- 신청인이 행정기관이 행한 재량행위에 불복하거나, 피신청인과의 행정배상 또는 행정보상에 관한 분쟁으로 행정복의를 신청한 경우, 복의기관은 사건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자원·합법적 원칙에 따라 조해를 진행할 수 있다. 양 당사자의 서명과 복의기관의 인장이 찍힌 조해서는 법률적 효력이 있음(실시조례 제50조)
- ※ 실시조례 제정 전에는 구 행정소송법 제50조(행정사건은 조해를 적용하지 않는다)에 따라 행정복의 과정에서 조해가 불가능하였음

7) 결정의 기속력

□ 피신청인은 행정심판결정을 이행하여야 함

- 피신청인이 행정심판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행정심판기관 혹은 상급행정기관은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명령해야 함(행정복의법 제32조)

□ 신청인이 기한이 경과해도 기소하지 않거나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종국재결의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행정복의법 제33조)

- 행정행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행정심판결정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강제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
-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행정심판결정은 행정심판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 피신청인이 행정복의결정을 이해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연기한 경우

- 직접적 책임을 지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경고, 과오 기록, 중대 과실 기록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이행을 거부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강등, 해직, 파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림(행정복의법 제37조)

8) 행정소송의 피고(행정소송법 제26조제2관)

-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행정복의에 있어서 유지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결정을 한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고, 행정복의 담당직원이 응소 업무를 수행함

— <행정소송의 피고>(행정소송법 제26조) —

제26조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피고가 된다.

행정복의를 거친 안건은 행정복의기관의 결정이 원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결정일 경우에는 원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행정복의기관이 공동피고가 되고, 복의기관이 원 행정행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복의기관이 피고가 된다.

복의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원 행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피고가 된다. 복의기관의 부작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복의기관이 피고가 된다.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하나의 행정행위를 한 경우 공동피고가 된다.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은 조직이 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위탁한 행정기관이 피고가 된다.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권한이 변경된 경우 그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피고가 된다.

第二十六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作出行政行为的行政机关是被告。

经复议的案件，复议机关决定维持原行政行为的，作出原行政行为的行政机关和复议机关是共同被告；复议机关改变原行政行为的，复议机关是被告。

复议机关在法定期限内未作出复议决定，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起诉原行政行为的，作出原行政行为的行政机关是被告；起诉复议机关不作为的，复议机关是被告。

两个以上行政机关作出同一行政行为的，共同作出行政行为的行政机关是共同被告。

行政机关委托的组织所作的行政行为，委托的行政机关是被告。

行政机关被撤销或者职权变更的，继续行使其职权的行政机关是被告。

□ 중국 행정복의 법령 전문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

- 1999. 4. 29.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회의에서 통과, 1999. 4. 29.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6호로 공포. 1999년 10월 1일 시행
- 2009. 8. 27.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 결정, 제1차수정
- 2017. 9. 1. 제2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회의 결정, 제2차수정

目录

- 第一章 总 则
- 第二章 行政复议范围
- 第三章 行政复议申请
- 第四章 行政复议受理
- 第五章 行政复议决定
- 第六章 法律责任
- 第七章 附 则

목 록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행정복의의 범위
- 제 3 장 행정복의의 신청
- 제 4 장 행정복의의 수리
- 제 5 장 행정복의의 결정
- 제 6 장 법률적 책임
- 제 7 장 부 칙

제1장 총 칙

第一章 总则

제1조 위법·부당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방지·시정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 및 감독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第一条 为了防止和纠正违法的或者不当的具体行政行为，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保障和监督行政机关依法行使职权，根据宪法，制定本法。

제2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구체적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경우,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행정복의의 신청을 수리하고, 행정복의 결정을 내릴 때 이 법을 적용한다.

第二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向行政机关提出行政复议申请，行政机关受理行政复议申请、作出行政复议决定，适用本法。

제3조 이 법에 따라 행정복의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행정복의기관이라 한다. 행정복의기관의 법제담당부서는 행정복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아래의 직책을 수행한다.

- (1) 행정복의 신청의 수리
- (2) 관련조직과 인원 에 대한 조사와 증거수집, 문서와 자료의 조사
- (3)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여부 심사, 행정심판 결정초안의 작성
- (4) 이 법 제7조가 열거한 관련 규정에 대한 심사신청의 처리나 전송
- (5) 이 법 규정을 위반한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그 처리 건의
- (6) 행정심판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안에 대한 응소사항 처리
- (7)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사항

행정기관에서 처음 행정복의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第三条 依照本法履行行政复议职责的行政机关是行政复议机关。行政复议机关负责法制工作的机构具体办理行政复议事项，履行下列职责：

- (一) 受理行政复议申请；
- (二) 向有关组织和人员调查取证，查阅文件和资料；
- (三) 审查申请行政复议的具体行政行为是否合法与适当，拟订行政复议决定；
- (四) 处理或者转送对本法第七条所列有关规定的审查申请；
- (五) 对行政机关违反本法规定的行为依照规定的权限和程序提出处理建议；
- (六) 办理因不服行政复议决定提起行政诉讼的应诉事项；
- (七) 法律、法规规定的其他职责。

行政机关中初次从事行政复议的人员，应当通过国家统一法律职业资格考试取得法律职业资格。

제4조 행정복의 기관에서 행정복의의 직무를 이행할 때, 반드시 합법, 공정, 공개, 즉시, 편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고, 법률과 법규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여야 한다.

第四条 行政复议机关履行行政复议职责，应当遵循合法、公正、公开、及时、便民的原则，坚持有错必纠，保障法律、法规的正确实施。

제5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법률로써 행정복의를 최종재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第五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行政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照行政诉讼法的规定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但是法律规定行政复议决定为最终裁决的除外。

제2장 행정복의의 범위

第二章 行政复议范围

제6조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 (1) 행정기관의 경고,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재산 몰수, 생산중지 명령, 허가증의 정지 및 취소, 면허의 정지 및 취소, 행정구류 등과 같은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
- (2) 행정기관이 행한 개인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재산의 차압, 압류, 동결 등과 같은 행정강제조치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3) 행정기관이 내린 관련 허가증·면허증·자질증(資質證)·자격증 등 증서의 변경, 중지, 철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4) 행정기관이 내린 토지·광산자원·강·하천·삼림·산지·초원·황무지·간석지·해역 등 자연 자원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5) 행정기관이 합법적인 경영 자주권을 침해했다고 여기는 경우
- (6) 행정기관이 행한 농업 도급계약의 변경이나 폐지로 인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여기는 경우
- (7) 행정기관이 위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재물을 징수하거나, 비용을 할당하거나 기타 의무이행을 요구했다고 여기는 경우
- (8) 법정 조건에 적합하게 허가증·면허증·자질증(資質證)·자격증 등 증서의 발급을 신청했거나 심사허가, 등기와 관련된 사항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경우
- (9) 행정기관에 신체적 권리·재산적 권리·교육을 받을 권리 등 법이 정한 직무이행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 (10) 행정기관에 법에서 정한 보상금(扶恤金), 사회보험금, 최저 생활보장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11) 행정기관의 기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여기는 경우

第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依照本法申请行政复议：

- (一) 对行政机关作出的警告、罚款、没收违法所得、没收非法财物、责令停产停业、暂扣或者吊销许可证、暂扣或者吊销执照、行政拘留等行政处罚决定不服的；
- (二) 对行政机关作出的限制人身自由或者查封、扣押、冻结财产等行政强制措施决定不服的；
- (三) 对行政机关作出的有关许可证、执照、资质证、资格证等证书变更、中止、撤销的决定不服的；
- (四) 对行政机关作出的关于确认土地、矿藏、水流、森林、山岭、草原、荒地、滩涂、海

域等自然资源的所有权或者使用权的决定不服的；

- (五) 认为行政机关侵犯合法的经营自主权的；
- (六) 认为行政机关变更或者废止农业承包合同，侵犯其合法权益的；
- (七) 认为行政机关违法集资、征收财物、摊派费用或者违法要求履行其他义务的；
- (八) 认为符合法定条件，申请行政机关颁发许可证、执照、资质证、资格证等证书，或者申请行政机关审批、登记有关事项，行政机关没有依法办理的；
- (九) 申请行政机关履行保护人身权利、财产权利、受教育权利的法定职责，行政机关没有依法履行的；
- (十) 申请行政机关依法发放抚恤金、社会保险金或者最低生活保障费，行政机关没有依法发放的；
- (十一) 认为行政机关的其他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

제7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 등이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다 음의 규정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여길 경우, 그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복의 를 신청할 때, 행정복의 기관에 그 규정에 대한 심사 신청을 함께 제기 할 수 있다.

- (1) 국무원 소속 기관의 규정
- (2) 현급 이상의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업무 부서의 규정
- (3) 향·진의 인민정부 규정

전관이 열거하는 규정에는 국무원 소속 기관, 위원회 규장과 지방 인민정부 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규장의 심사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第七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行政机关的具体行政行为所依据的下列规定不合法，在对具体行政行为申请行政复议时，可以一并向行政复议机关提出对该规定的审查申请：

- (一) 国务院部门的规定；
- (二)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工作部门的规定；
- (三) 乡、镇人民政府的规定。

前款所列规定不含国务院部、委员会规章和地方人民政府规章。规章的审查依照法律、行政法规办理。

제8조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 혹은 기타 인사 처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법률 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에 관하여 내린 조해 혹은 기타 처리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八条 不服行政机关作出的行政处分或者其他人事处理决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提出申诉。

不服行政机关对民事纠纷作出的调解或者其他处理，依法申请仲裁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

제3장 행정복의의 신청 第三章 行政复议申请

제9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여겨지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알 수 있었던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복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률로 규정해 놓은 신청기한이 60일을 초과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항력 혹은 기타의 정당한 이유로 법정 신청 기한이 지체된 경우, 신청기한은 장애가 소멸된 날부터 다시 계산한다.

第九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可以自知道该具体行政行为之日起六十日内提出行政复议申请；但是法律规定的申请期限超过六十日的除外。
因不可抗力或者其他正当理由耽误法定申请期限的，申请期限自障碍消除之日起继续计算。

제10조 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신청인이 된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개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족이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민이 민사행위 무능력자 혹은 제한 민사 행위 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이 행정복의를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해산되는 경우, 그 권리를 물려받은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 등은 제3자로서 행정복의에 참여할 수 있다.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

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 피신청인이 된다.

신청인과 제3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행정복의에 대리 참가를 위탁할 수 있다.

第十条 依照本法申请行政复议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是申请人。

有权申请行政复议的公民死亡的，其近亲属可以申请行政复议。有权申请行政复议的公民为无民事行为能力人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人的，其法定代理人可以代为申请行政复议。有权申请行政复议的法人或者其他组织终止的，承受其权利的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申请行政复议。

同申请行政复议的具体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其他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作为第三人参加行政复议。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行政机关的具体行政行为不服申请行政复议的，作出具体行政行为的行政机关是被申请人。

申请人、第三人可以委托代理人代为参加行政复议。

제11조 신청인이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그 자리에서 신청인의 기본정황·행정복의청구·행정복의를 신청하는 주요사실·이유 및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第十一 申请人申请行政复议，可以书面申请，也可以口头申请；口头申请的，行政复议机关应当当场记录申请人的基本情况、行政复议请求、申请行政复议的主要事实、理由和时间。

제12조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 업무부문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선택적으로 그 부문의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또한 직상급 주관부문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 금융, 국세, 외환 관리 등 수직적 지도를 실시하는 행정 기관과 국가 안전 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직상급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第十二条 对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工作部门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由申请人选择，

可以向该部门的本级人民政府申请行政复议，也可以向上一级主管部门申请行政复议。

对海关、金融、国税、外汇管理等实行垂直领导的行政机关和国家安全机关的具体行政行

为不服的，向上一级主管部门申请行政复议。

제13조 지방각급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직상급 지방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성과 자치구 인민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설립하는 파출기관 소속의 현급 지방 인민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해당 파출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第十三条 对地方各级人民政府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上一级地方人民政府申请行政复议。

对省、自治区人民政府依法设立的派出机关所属的县级地方人民政府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该派出机关申请行政复议。

제14조 국무원 소속 기관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국무원 소속 기관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국무원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종재결을 한다.

第十四条 对国务院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作出该具体行政行为的国务院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申请行政复议。对行政复议决定不服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也可以向国务院申请裁决，国务院依照本法的规定作出最终裁决。

제15조 이 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 이외의 기타 행정기관·조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 (1)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파출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해당 파출기관을 설립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 (2) 정부 업무 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파출기구가 법률, 법규 혹은 규장 규정에 의거하여 자기 명의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파출기구를 설립한 부서 혹은 관련 부서의 동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 (3) 법률, 법규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각각의 해당 조직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인민정부와 지방인민정부의 업무부서 혹은 국무원 소속 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 (4) 둘 혹은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 명의로 진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공동의 직상급 행정 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 (5) 폐지된 행정기관이 폐지되기 전에 내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권한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직상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 전관에서 열거한 내용들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신청인은 구체적 행정행위 발생지의 현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복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접수한 현급 지방인민정부는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第十五条 对本法第十二条、第十三条、第十四条规定以外的其他行政机关、组织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按照下列规定申请行政复议：

- (一) 对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依法设立的派出机关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设立该派出机关的人民政府申请行政复议；
- (二) 对政府工作部门依法设立的派出机构依照法律、法规或者规章规定，以自己的名义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设立该派出机构的部门或者该部门的本级地方人民政府申请行政复议；
- (三) 对法律、法规授权的组织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分别向直接管理该组织的地方人民政府、地方人民政府工作部门或者国务院部门申请行政复议；
- (四) 对两个或者两个以上行政机关以共同的名义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其共同上一级行政机关申请行政复议；
- (五) 对被撤销的行政机关在撤销前所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继续行使其职权的行政机关的上一级行政机关申请行政复议。

有前款所列情形之一的，申请人也可以向具体行政行为发生地的县级地方人民政府提出行政复议申请，由接受申请的县级地方人民政府依照本法第十八条的规定办理。

제16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복의기관이 이미 법에 의거하여 수리한 경우, 혹은 법률과 법규에서 먼저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복의 결정에 대해 불복 시에 다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한 경우, 법정 행정복의기한 내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이미 법에 의거하여 수리한 것은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

第十六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申请行政复议，行政复议机关已经依法受理的，或者法律、法规规定应当先向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对行政复议决定不服再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的，在法定行政复议期限内不得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人民法院已经依法受理的，不得申请行政复议。

제4장 행정복의의 수리

第四章 行政复议受理

제17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 신청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행정복의신청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만 해당 기관의 수리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은, 신청인이 관련 행정복의기관에 다시 신청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행정복의기관의 법제업무 담당부서가 접수한 날을 수리일로 한다.

第十七条 行行政复议机关收到行政复议申请后，应当在五日内进行审查，对不符合本法规定的行政复议申请，决定不予受理，并书面告知申请人；对符合本法规定，但是不属于本机关受理的行政复议申请，应当告知申请人向有关行政复议机关提出。
除前款规定外，行政复议申请自行政复议机关负责法制工作的机构收到之日起即为受理。

제18조 이 법 제15조제2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는 현급 지방정부는 이 법 제15조제1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타 행정복의기관이 수리하는 행정복의신청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한(接到)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행정기관으로 전송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행정복의기관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第十八条 依照本法第十五条第二款的规定接受行政复议申请的县级地方人民政府，对依照

本法第十五条第一款的规定属于其他行政复议机关受理的行政复议申请，应当自接到该行政复议申请之日起七日内，转送有关行政复议机关，并告知申请人。接受转送的行政复议机关应当依照本法第十七条的规定办理。

제19조 법률과 법규 규정이 우선적으로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다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행정복의기관이 수리하지 않는 결정을 하거나 혹은 수리 후 행정복의기한을 초과하여도 회답하지 않는 경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수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혹은 행정복의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十九条 法律、法规规定应当先向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对行政复议决定不服再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的，行政复议机关决定不予受理或者受理后超过行政复议期限不作答复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自收到不予受理决定书之日起或者行政复议期满之日起十五日内，依法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제20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복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행정복의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리하지 않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은 그 수리를 명령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상급 행정기관도 이를 직접 수리할 수 있다.

第二十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依法提出行政复议申请，行政复议机关无正当理由不予受理的，上级行政机关应当责令其受理；必要时，上级行政机关也可以直接受理。

제21조 행정복의기간 중에 있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1) 피신청인이 집행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 (2) 행정복의기관이 집행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 (3) 신청인이 집행의 정지를 신청하고, 행정복의기관에서 그 요구가 합리적이라 여겨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
- (4) 법률이 집행의 정지를 규정한 경우

第二十一条 行政复议期间具体行政行为不停止执行；但是，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停止

执行：

- (一) 被申请人认为需要停止执行的；
- (二) 行政复议机关认为需要停止执行的；
- (三) 申请人申请停止执行，行政复议机关认为其要求合理，决定停止执行的；
- (四) 法律规定停止执行的。

제5장 행정복의의 결정

第五章 行政复议决定

제22조 원칙적으로, 행정복의는 서면심사의 방식을 채택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요구가 있거나, 행정복의기관의 법제업무 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련 조직 및 인원 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고, 신청인, 피신청인 및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第二十二条 行政复议原则上采取书面审查的办法，但是申请人提出要求或者行政复议机关负责法制工作的机构认为有必要时，可以向有关组织和人员调查情况，听取申请人、被申请人和第三人的意见。

제23조 행정복의기관의 법제업무 담당부서는 행정복의신청이 수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복의 신청서의 부분 혹은 행정복의 신청서의 필사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서 부분 혹은 필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초에 행정행위를 한 증거 및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과 제3자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조사 또는 열람할 수 있고, 국가 비밀, 상업적 기밀 혹은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복의기관은 조사·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第二十三条 行政复议机关负责法制工作的机构应当自行政复议申请受理之日起七日内，将行政复议申请书副本或者行政复议申请笔录复印件发送被申请人。被申请人应当自收到申请书副本或者申请笔录复印件之日起十日内，提出书面答复，并提交当初作出具体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

申请人，第三人可以查阅被申请人提出的书面答复，作出具体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

他有关材料，除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外，行政复议机关不得拒绝。

제24조 행정복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 피신청인은 스스로 신청인과 기타 관련 조직 혹은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第二十四条 在行政复议过程中，被申请人不得自行向申请人和其他有关组织或者个人收集证据。

제25조 행정복의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철회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철회하면 행정복의는 종료된다.

第二十五条 行政复议决定作出前，申请人要求撤回行政复议申请的，经说明理由，可以撤回；撤回行政复议申请的，行政复议终止。

제26조 신청인이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에, 이 법 제7조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심사신청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해당 규정에 대하여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항은 30일 이내에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처리 권한이 없는 사항은 7일 이내에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전송하여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처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이를 60일 이내에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처리기간 중에는 행정행위의 심사가 중지된다.

第二十六条 申请人在申请行政复议时，一并提出对本法第七条所列有关规定的审查申请的，行政复议机关对该规定有权处理的，应当在三十日内依法处理；无权处理的，应当在七日内按照法定程序转送有权处理的行政机关依法处理，有权处理的行政机关应当在六十日内依法处理。处理期间，中止对具体行政行为的审查。

제27조 행정복의기관이 피신청인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할 때, 그 근거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 심판기관이 처리권한이 있는 사항은 30일 이내에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 권한이 없는 사항인 경우, 7일 이내에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전송하여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중에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가 중지된다.

第二十七条 行政复议机关在对被申请人作出的具体行政行为进行审查时，认为其依据不合

法，本机关有权处理的，应当在三十日内依法处理；无权处理的，应当在七日内按照法定程序转送有权处理的国家机关依法处理。处理期间，中止对具体行政行为的审查。

제28조 행정복의기관의 법제업무 담당부서는 피신청인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행정복의기관의 책임자의 동의를 거치거나 전체토론을 거친 후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복의결정을 내린다.

- (1) 행정행위의 인정사실이 뚜렷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적용근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내용이 타당한 것은 유지(維持)의 결정을 내린다.
- (2) 피신청인이 법정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일정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결정한다.
- (3) 행정행위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정행위의 위법함을 취소, 변경 혹은 확인하는 결정을 한다. 그 행정행위의 위법함을 취소하거나 혹은 확인을 결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일정한 기한 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주요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2. 적용한 근거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직권을 월권 혹은 남용한 경우
 5.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뚜렷하게 부당한 경우
- (4) 피신청인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면 답변서와 당초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증거 및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구체적 행정행위는 증거 및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결정을 내린다.

행정복의기관이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새로 할 것을 명령했을 경우 피신청인은 동일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와 서로 동일하거나,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第二十八条 行政复议机关负责法制工作的机构应当对被申请人作出的具体行政行为进行审查，提出意见，经行政复议机关的负责人同意或者集体讨论通过后，按照下列规定作出行政复议决定：

- (一) 具体行政行为认定事实清楚，证据确凿，适用依据正确，程序合法，内容适当的，决

定维持；

(二) 被申请人不履行法定职责的，决定其在一定期限内履行；

(三) 具体行政行为有下列情形之一的，决定撤销、变更或者确认该具体行政行为违法；决定撤销或者确认该具体行政行为违法的，可以责令被申请人在一定期限内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

1. 主要事实不清、证据不足的；
2. 适用依据错误的；
3. 违反法定程序的；
4. 超越或者滥用职权的；
5. 具体行政行为明显不当的。

(四) 被申请人不按照本法第二十三条的规定提出书面答复、提交当初作出具体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的，视为该具体行政行为没有证据、依据，决定撤销该具体行政行为。

行政复议机关责令被申请人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的，被申请人不得以同一的事实和理由作出与原具体行政行为相同或者基本相同的具体行政行为。

제29조 신청인은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행정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다. 행정복의기관은 국가배상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 마땅히 배상해야 하는 경우 행정행위의 취소나 변경의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위법함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피신청인이 법에 의거하여 배상할 것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에 행정배상청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복의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벌금의 취소 혹은 변경, 불법자금의 모집, 재물의 몰수, 재물의 징수, 비용의 분배 및 재산에 대한 봉인, 압류, 동결 등 구체적 행정행위 결정할 경우, 피신청인이 재산의 반환, 재산의 봉인, 압류, 동결조치를 해제하거나 혹은 이와 동등한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第二十九条 申请人在申请行政复议时可以一并提出行政赔偿请求，行政复议机关对符合国家赔偿法的有关规定应当给予赔偿的，在决定撤销、变更具体行政行为或者确认具体行政行为违法时，应当同时决定被申请人依法给予赔偿。

申请人在申请行政复议时没有提出行政赔偿请求的，行政复议机关在依法决定撤销或者变更罚款，撤销违法集资、没收财物、征收财物、摊派费用以及对财产的查封、扣押、冻结

等具体行政行为时，应当同时责令被申请人返还财产，解除对财产的查封、扣押、冻结措施，或者赔偿相应的价款。

제30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 광산자원, 하천, 삼림, 산지, 초원, 황무지, 간석지, 해역 등 자연자원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을 침범하였다고 여겨지는 경우, 행정복의를 먼저 신청해야 하고, 행정복의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행한 행정구획에 대한 감정, 조해, 혹은 토지 징수의 결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토지, 광산, 하천, 삼림, 산지, 초원, 황무지, 간석지, 해역 등 자연자원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을 확정하는 행정복의결정이 최종재결이다.

第三十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行政机关的具体行政行为侵犯其已经依法取得的土地、矿藏、水流、森林、山岭、草原、荒地、滩涂、海域等自然资源的所有权或者使用权的，应当先申请行政复议；对行政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根据国务院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对行政区划的勘定、调整或者征收土地的决定，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认土地、矿藏、水流、森林、山岭、草原、荒地、滩涂、海域等自然资源的所有权或者使用权的行政复议决定为最终裁决。

제31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복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서 규정한 행정복의기한이 60일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연장기한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리면 행정복의결정서를 작성하고 날인한다.

행정복의결정서가 일단 송달되면, 즉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第三十一条 行政复议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六十日内作出行政复议决定；但是法律规定的行政复议期限少于六十日的除外。情况复杂，不能在规定期限内作出行政复议决定的，经行政复议机关的负责人批准，可以适当延长，并告知申请人和被申请人；但是延长

期限最多不超过三十日。

行政复议机关作出行政复议决定，应当制作行政复议决定书，并加盖印章。

行政复议决定书一经送达，即发生法律效力。

제32조 피신청인은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 혹은 상급행정기관은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第三十二条 被申请人应当履行行政复议决定。

被申请人不履行或者无正当理由拖延履行行政复议决定的，行政复议机关或者有关上级行政机关应当责令其限期履行。

제33조 신청인이 기한이 경과해도 기소하지 않거나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혹은 최종재결의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행정행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행정복의결정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강제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 (2)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행정복의결정은 행정복의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第三十三条 申请人逾期不起诉又不履行行政复议决定的，或者不履行最终裁决的行政复议决定的，按照下列规定分别处理：

- (一) 维持具体行政行为的行政复议决定，由作出具体行政行为的行政机关依法强制执行，或者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 (二) 变更具体行政行为的行政复议决定，由行政复议机关依法强制执行，或者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제6장 법적 책임

第六章 法律责任

제34조 행정복의기관이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의거하여 제기하는 행정복의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복의신청을 전송하지 않

거나 법정 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을 있는 주관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경고, 과오 기록 혹은 중대 과실 기록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수리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수리하지 않거나 규정에 의거하여 전송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강등, 해직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第三十四条 行政复议机关违反本法规定，无正当理由不予受理依法提出的行政复议申请或者不按照规定转送行政复议申请的，或者在法定期限内不作出行政复议决定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警告、记过、记大过的行政处分；经责令受理仍不受理或者不按照规定转送行政复议申请，造成严重后果的，依法给予降级、撤职、开除的行政处分。

제35조 행정복의기관 담당자가 행정복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 사적인 행위, 기타 부절절한 행위, 독직 혹은 실직행위를 하면, 법에 의거하여 경고, 과오 기록의 행정처분을 한다. 중대한 안건의 경우 법에 의거하여 강등, 해직, 파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다.

第三十五条 行政复议机关工作人员在行政复议活动中，徇私舞弊或者有其他渎职、失职行为的，依法给予警告、记过、记大过的行政处分；情节严重的，依法给予降级、撤职、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제36조 피신청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증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변경을 방해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있는 주관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경고, 과오 기록, 중대 과실 기록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보복하거나 모함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강등, 해직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第三十六条 被申请人违反本法规定，不提出书面答复或者不提交作出具体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或者阻挠、变相阻挠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依法申请行政复议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警告、记过、记大过的行政处

分；进行报复陷害的，依法给予降级、撤职、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제37조 피신청인이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연기한 경우, 직접 책임을 있는 주관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경고, 과오 기록, 중대 과실 기록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이행을 거부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강등, 해직, 파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第三十七条 被申请人不履行或者无正当理由拖延履行行政复议决定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警告、记过、记大过的行政处分；经责令履行仍拒不履行的，依法给予降级、撤职、开除的行政处分。

제38조 행정복의기관의 법제업무 담당부서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복의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한에 따라 행정복의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사적인 부정행위를 하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혹은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정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 건의를 해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은 이 법과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第三十八条 行政复议机关负责法制工作的机构发现有无正当理由不予受理行政复议申请、不按照规定期限作出行政复议决定、徇私舞弊、对申请人打击报复或者不履行行政复议决定等情形的，应当向有关行政机关提出建议，有关行政机关应当依照本法 and 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作出处理。

제7장 부칙

第七章 附 则

제39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신청을 수리할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행정복의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기관의 행정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며 해당 기관의 예산에서 지출한다.

第三十九条 行政复议机关受理行政复议申请，不得向申请人收取任何费用。行政复议活动所需经费，应当列入本机关的行政经费，由本级财政予以保障。

제40조 행정복의기간의 계산과 행정복의문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중의 기간과 송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이 법의 행정복의기간에 있어 “5일”, “7일”의 규정은 업무일을 가리키며 공휴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第四十条 行政复议期间的计算和行政复议文书的送达, 依照民事诉讼法关于期间、送达的规定执行。

本法关于行政复议期间有关“五日”、“七日”的规定是指工作日, 不含节假日。

제41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조직이 중국의 국경 내에서 행정복의를 신청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第四十一条 外国人、无国籍人、外国组织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申请行政复议, 适用本法。

제42조 이 법의 시행 이전에 공포된 법률 중 행정복의와 관련되는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四十二条 本法施行前公布的法律有关行政复议的规定与本法的规定不一致的, 以本法的规定为准。

제43조 이 법은 1999. 10. 1.부터 시행한다. 1990. 12. 24 국무원이 발령하고, 1994. 10. 10. 국무원이 수정 발령한 <행정복의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第四十三条 本法自1999年10月1日起施行。1990年12月24日国务院发布、1994年10月9日国务院修订发布的《行政复议条例》同时废止。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实施条例

2007. 5. 23. 국무원 제177차 상무회의 통과, 2007. 8. 1.부터 시행

目录

第一章	总则
第二章	行政复议申请
第三章	行政复议受理
第四章	行政复议决定
第五章	行政复议指导和监督
第六章	法律责任
第七章	附则

목 록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행정복의의 신청
제 3 장	행정복의의 수리
제 4 장	행정복의의 결정
제 5 장	행정복의의 지도 및 감독
제 6 장	법률적 책임
제 7 장	부 칙

제1장 총 칙

第一章 总则

제1조 행정쟁송의 해결, 법치정부 건설, 사회 화합에 있어 행정복의제도가 한 단계 높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행정복의법」(이하 “행정복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第一条 为了进一步发挥行政复议制度在解决行政争议、建设法治政府、构建社会主义和谐社会中的作用，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以下简称行政复议法），制定本条例。

제2조 각급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당해 기관의 법제업무 담당부서(이하 ‘행정복의기구’라 한다)에 대해 법에 따른 행정복의사건 처리를 위하여 지도 및 지원을 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 전담직원을 충원하고 조정하여 행정복의기구의 업무처리 능력과 담당업무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二条 各级行政复议机关应当认真履行行政复议职责，领导并支持本机关负责法制工作的

机构（以下简称行政复议机构）依法办理行政复议事项，并依照有关规定配备、充实、调剂专职行政复议人员，保证行政复议机构的办案能力与工作任务相适应。

제3조 행정복의기구는 행정복의법 제3조에 따른 직책을 수행하는 외에 아래 열거한 직책을 수행한다.

- (1) 행정복의법 제18조에 따라 관련 행정복의청구사건의 이송.
- (2) 행정복의법 제29조에 따른 행정배상 등 사항의 처리
- (3) 직책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복의사건의 수리와 행정복의결정의 이행 독려
- (4) 행정복의 및 그에 따른 행정소송 사건의 통계와 중요 행정복의결정의 안전 검토 업무 처리
- (5) 행정복의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대응업무
- (6) 행정복의 업무의 수행 중에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시에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복의기관에 적시 보고

第三条 行政复议机构除应当依照行政复议法第三条的规定履行职责外，还应当履行下列职责：

- （一）依照行政复议法第十八条的规定转送有关行政复议申请；
- （二）办理行政复议法第二十九条规定的行政赔偿等事项；
- （三）按照职责权限，督促行政复议申请的受理和行政复议决定的履行；
- （四）办理行政复议、行政应诉案件统计和重大行政复议决定备案事项；
- （五）办理或者组织办理未经行政复议直接提起行政诉讼的行政应诉事项；
- （六）研究行政复议工作中发现的问题，及时向有关机关提出改进建议，重大问题及时向行政复议机关报告。

제4조 행정복의 전담직원은 행정복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품행,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녀야 한다. 세부사항은 국무원 법제기구가 국무원 유관 부서와 함께 규정을 마련한다.

第四条 专职行政复议人员应当具备与履行行政复议职责相适应的品行、专业知识和业务能力，并取得相应资格。具体办法由国务院法制机构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

제2장 행정복의의 신청

第二章 行政复议申请

제1절 신청인

第一节 申请人

제5조 행정복의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복의를 청구하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신청인이 된다.

第五条 依照行政复议法和本条例的规定申请行政复议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为申请人。

제6조 합화기업이⁶⁾ 행정복의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사항에 합치되는 기업을 신청인으로 하여야 하고, 합화기업의 사무를 집행하는 주주가 당해 기업의 행정복의에 참가한다. 기타 합화조직이 행정복의를 청구하는 경우 주주가 공동으로 행정복의를 청구한다. 전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법인격을 구비하지 않은 그 밖의 조직이 행정복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조직의 주요 책임자가 당해 조직을 대표하여 행정복의에 참가한다. 주요 책임자가 없는 경우 공동 추천한 기타 구성원이 당해 조직을 대표하여 행정복의에 참가한다.

第六条 合伙企业申请行政复议的，应当以核准登记的企业为申请人，由执行合伙事务的合伙人代表该企业参加行政复议；其他合伙组织申请行政复议的，由合伙人共同申请行政复议。前款规定以外的不具备法人资格的其他组织申请行政复议的，由该组织的主要负责人代表该组织参加行政复议；没有主要负责人的，由共同推选的其他成员代表该组织参加行政复议。

제7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주주 대표자 회의, 이사회는 행정기관이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의 명의로 행정복의를 청구할 수 있다.

第七条 股份制企业的股东大会、股东代表大会、董事会认为行政机关作出的具体行政行为侵犯企业合法权益的，可以以企业的名义申请行政复议。

6) 비법인으로 일반합화기업(우리 합명회사와 유사)과 유한합화기업(우리 합자회사와 유사)으로 나뉘고, 주주는 유한책임자와 무한책임자로 나뉘어 등기가 되며, 주주 중 한명은 반드시 무한 책임을 지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측은 기업운영 책임자이며, 유한책임자(기업책임자 이외에 주주)는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이 개별 투자자들이 개인 소득세만 부담

제8조 동일한 행정복의사건에서 신청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1 내지 5명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복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第八条 同一行政复议案件申请人超过5人的，推选1至5名代表参加行政复议。

제9조 행정복의 기간 중에 행정복의기구는 신청인 이외의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심사 중에 있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자로서 행정복의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행정복의 중에 신청인 이외의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심리 및 조사 중인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행정복의기구에 제3자로서 행정복의에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자가 행정복의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행정복의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九条 行政复议期间，行政复议机构认为申请人以外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与被审查的具体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可以通知其作为第三人参加行政复议。

行政复议期间，申请人以外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与被审查的具体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可以向行政复议机构申请作为第三人参加行政复议。

第三人不参加行政复议，不影响行政复议案件的审理。

제10조 신청인 및 제3자는 1 내지 2명의 대리인에게 행정복의에 참가하는 위탁할 수 있다. 신청인 및 제3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에는 위임한 사항, 권한 및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인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구두로 위임할 수 있다. 구두로 위임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청인 및 제3자는 위임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서면으로 행정복의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十条 申请人、第三人可以委托1至2名代理人参加行政复议。申请人、第三人委托代理人的，应当向行政复议机构提交授权委托书。授权委托书应当载明委托事项、权限和期限。公民在特殊情况下无法书面委托的，可以口头委托。口头委托的，行政复议机构应当核实并记录在卷。申请人、第三人解除或者变更委托的，应当书面报告行政复议机构。

제2절 피신청인

第二节 被申请人

제11조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복의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당해 행정청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행정복의를 청구한다.

第十一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行政机关的具体行政行为不服，依照行政复议法和本条例的规定申请行政复议的，作出该具体行政行为的行政机关为被申请人。

제12조 행정기관이 법률, 법규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과 공동 명의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과 함께 공동으로 피신청인이 된다.

행정기관이 기타 조직과 공동 명의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경우 행정기관이 피신청인이 된다.

第十二条 行政机关与法律、法规授权的组织以共同的名义作出具体行政行为的，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组织为共同被申请人。

行政机关与其他组织以共同名义作出具体行政行为的，行政机关为被申请人。

제13조 하급 행정기관이 법률, 법규, 예규에 따라 상급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경우 허가를 한 기관이 피신청인이 된다.

第十三条 下级行政机关依照法律、法规、规章规定，经上级行政机关批准作出具体行政行为的，批准机关为被申请人。

제14조 행정기관이 설립한 파출기관, 소속기 또는 기타 조직이 법률, 법규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대외적으로 자기 명의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이 피신청인이 된다.

第十四条 行政机关设立的派出机构、内设机构或者其他组织，未经法律、法规授权，对外以自己名义作出具体行政行为的，该行政机关为被申请人。

제3절 행정복의 신청기한

第三节 行政复议申请期限

제15조 행정복의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행정복의 청구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 (1)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현장에서 한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날부터 계산한다.
- (2)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기록한 법규문서를 직접 교부한 경우 교부받는 자가 수령서명을 한 날부터 계산한다.
- (3)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기록한 법규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송달 받은 자가 우편물 수령증에 서명을 한 날부터 계산한다. 우편물 수령증이 없는 경우 송달 받은 자가 서명한 날부터 계산한다.
- (4)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적법하게 공고형식으로 송달을 받은 자에게 알린 경우 공고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계산한다.
- (5)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제때 알리지 아니하고 추후에 보완적으로 알린 경우 그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6) 피신청인이 개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증빙자료로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한다.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후 적법하게 관련된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법규문서를 송달하지 않은 경우 그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당해 행정행위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第十五条 行政复议法第九条第一款规定的行政复议申请期限的计算，依照下列规定办理：

- (一) 当场作出具体行政行为的，自具体行政行为作出之日起计算；**
- (二) 载明具体行政行为的法律文书直接送达的，自受送达人签收之日起计算；**
- (三) 载明具体行政行为的法律文书邮寄送达的，自受送达人在邮件签收单上签收之日起计算；没有邮件签收单的，自受送达人在送达回执上签名之日起计算；**
- (四) 具体行政行为依法通过公告形式告知受送达人的，自公告规定的期限届满之日起计算；**
- (五) 行政机关作出具体行政行为时未告知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事后补充告知的，自**

该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收到行政机关补充告知的通知之日起计算；

(六) 被申请人能够证明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知道具体行政行为的，自证据材料证明其知道具体行政行为之日起计算。

行政机关作出具体行政行为，依法应当向有关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送达法律文书而未送达的，视为该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不知道该具体行政行为。

제16조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법 제6조제8항, 제9항, 제10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법정책임을 이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복의 청구기한은 아래 열거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 이행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행기한의 만료일부터 계산한다.

(2) 이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긴급 상황에서 행정 기관에 인격권 보호, 재산권의 법정 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행정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복의 청구 기한은 전관 규정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第十六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依照行政复议法第六条第(八)项、第(九)项、第(十)项的规定申请行政机关履行法定职责，行政机关未履行的，行政复议申请期限依照下列规定计算：

(一) 有履行期限规定的，自履行期限届满之日起计算；

(二) 没有履行期限规定的，自行政机关收到申请满60日起计算。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在紧急情况下请求行政机关履行保护人身权、财产权的法定职责，行政机关不履行的，行政复议申请期限不受前款规定的限制。

제17조 행정기관이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행정복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행정복의기관 및 행정복의 청구기한을 알려야 한다.

第十七条 行政机关作出的具体行政行为对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权利、义务可能产生不利影响的，应当告知其申请行政复议的权利、行政复议机关和行政复议申请期限。

제4절 행정복의 신청의 제출

第四节 行政复议申请的提出

제18조 신청인은 서면으로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직접 제출,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행정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행정복의기구는 전자우편의 형식으로 제기된 행정복의청구를 접수할 수 있다.

第十八条 申请人书面申请行政复议的，可以采取当面递交、邮寄或者传真等方式提出行政复议申请。

有条件的行政复议机构可以接受以电子邮件形式提出的行政复议申请。

제19조 신청인이 서면으로 행정복의를 청구하는 경우 행정복의청구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기본적인 사항. 개인의 경우 성명, 성별, 연령, 신분증번호, 직장명, 주소 및 우편번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경우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및 직책
- (2) 피신청인의 명칭
- (3) 행정복의청구, 행정복의신청의 주요사실 및 이유
- (4)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 (5) 행정복의 청구일

第十九条 申请人书面申请行政复议的，应当在行政复议申请书中载明下列事项：

- (一) 申请人的基本情况，包括：公民的姓名、性别、年龄、身份证号码、工作单位、住所、邮政编码；法人或者其他组织的名称、住所、邮政编码和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职务；**
- (二) 被申请人的名称；**
- (三) 行政复议请求、申请行政复议的主要事实和理由；**
- (四) 申请人的签名或者盖章；**
- (五) 申请行政复议的日期。**

제20조 신청인이 구두로 행정복의를 청구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구는 이 조례 제19조에 따라 그 자리에서 행정복의 청구 기록을 신청인에게 확인시키거나 신청인에게 읽어

준 후 신청인이 서명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二十条 申请人口头申请行政复议的，行政复议机构应当依照本条例第十九条规定的事项，当场制作行政复议申请笔录交申请人核对或者向申请人宣读，并由申请人签字确认。

제21조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피신청인이 법정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전에 피신청인에게 법정책임의 이행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그 이행을 거부하였다는 증빙자료
- (2) 행정복의 청구 시 행정배상요구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침해 및 손해 야기에 관한 증빙자료
- (3) 법률, 법규에서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한 그 밖의 경우

第二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申请人应当提供证明材料：

- (一) 认为被申请人不履行法定职责的，提供曾经要求被申请人履行法定职责而被申请人未履行的证明材料；
- (二) 申请行政复议时一并提出行政赔偿请求的，提供受具体行政行为侵害而造成损害的证明材料；
- (三) 法律、法规规定需要申请人提供证据材料的其他情形。

제22조 신청인이 행정복의를 청구하면서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행정복의기구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경정할 것을 알려야 한다.

第二十二条 申请人提出行政复议申请时错列被申请人的，行政复议机构应当告知申请人变更被申请人。

제23조 신청인은 둘 이상의 공무원 소속 기관이 공동으로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복의법 제14조의 따라 그 중 어떤 하나의 기관에 행정복의를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 소속 기관은 공동으로 행정복의를 결정하여야 한다.

第二十三条 申请人对两个以上国务院部门共同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依照行政复议法第十四条的规定，可以向其中任何一个国务院部门提出行政复议申请，由作出具体行政

行为的国务院部门共同作出行政复议决定。

제24조 신청인은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성급 이하 직속기관이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당해 기관 관할 인민정부 또는 직상급 관할 기관에 행정복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第二十四条 申请人对经国务院批准实行省以下垂直领导的部门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可以选择向该部门的本级人民政府或者上一级主管部门申请行政复议；省、自治区、直辖市另有规定的，依照省、自治区、直辖市的规定办理。

제25조 신청인은 행정복의법 제30조제2관에 따라 행정복의를 청구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청구하여야 한다.

第二十五条 申请人依照行政复议法第三十条第二款的规定申请行政复议的，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提出行政复议申请。

제26조 행정복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규정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복의를 청구함과 동시에 당해 규정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복의를 청구할 당시 당해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규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 재결을 하기 전까지 행정복의기관에 당해 규정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第二十六条 依照行政复议法第七条的规定，申请人认为具体行政行为所依据的规定不合法的，可以在对具体行政行为申请行政复议的同时一并提出对该规定的审查申请；申请人在对具体行政行为提出行政复议申请时尚不知道该具体行政行为所依据的规定的，可以在行政复议机关作出行政复议决定前向行政复议机关提出对该规定的审查申请。

제3장 행정복의의 수리

第三章 行政复议受理

제27조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복의를 청구하며, 행정복의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행정복의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第二十七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行政机关的具体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提出行政复议申请，除不符合行政复议法和本条例规定的申请条件的，行政复议机关必须受理。

제28조 행정복의 청구가 아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수리하여야 한다.

- (1) 명확한 신청인과 규정에 부합하는 피신청인이 있을 것
- (2) 신청인 및 구체적인 행정행위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 (3) 구체적인 행정복의 청구 및 이유가 있을 것
- (4) 법정 청구기간 내에 제출될 것
- (5) 행정복의법 규정에 따른 행정복의 청구 범위 내에 속할 것
- (6) 행정복의 청구를 받은 행정복의기관의 업무범위 내에 속할 것
- (7) 기타 행정복의기관이 동일한 행정복의 청구를 수리하지 않은 것일 것. 동일한 주체가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을 인민법원이 수리한 것이 아닐 것

第二十八条 行政复议申请符合下列规定的，应当予以受理：

- (一) 有明确的申请人和符合规定的被申请人；
- (二) 申请人与具体行政行为有利害关系；
- (三) 有具体的行政复议请求和理由；
- (四) 在法定申请期限内提出；
- (五) 属于行政复议法规定的行政复议范围；
- (六) 属于收到行政复议申请的行政复议机构的职责范围；
- (七) 其他行政复议机关尚未受理同一行政复议申请，人民法院尚未受理同一主体就同一事实提起的行政诉讼。

제29조 행정복의 청구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당해 행정복의의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요구에는 보완할 사항과 합리적인 보완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신청인이 행정복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第二十九条 行政复议申请材料不齐全或者表述不清楚的，行政复议机构可以自收到该行政复议申请之日起5日内书面通知申请人补正。补正通知应当载明需要补正的事项和合理的补正期限。无正当理由逾期不补正的，视为申请人放弃行政复议申请。补正申请材料所用时间不计入行政复议审理期限。

제30조 신청인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둘 또는 그 이상의 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청구하는 경우 가장 먼저 행정복의 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수리한다. 행정복의 청구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 행정복의 청구를 받은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동 상급기관이 10일 이내에 수리할 기관을 지정한다. 협의결정 또는 수리할 기관의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복의 심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第三十条 申请人就同一事项向两个或者两个以上有权受理的行政机关申请行政复议的，由最先收到行政复议申请的行政机关受理；同时收到行政复议申请的，由收到行政复议申请的行政机关在10日内协商确定；协商不成的，由其共同上一级行政机关在10日内指定受理机关。协商确定或者指定受理机关所用时间不计入行政复议审理期限。

제31조 행정복의법 제20조에 따라 상급 행정기관은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 청구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수리를 독촉할 수 있고, 독촉한 후에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수리기한을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수리할 수 있다. 행정복의 청구가 법정 수리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第三十一条 依照行政复议法第二十条的规定，上级行政机关认为行政复议机关不予受理行政复议申请的理由不成立的，可以先行督促其受理；经督促仍不受理的，应当责令其限期受理，必要时也可以直接受理；认为行政复议申请不符合法定受理条件的，应当告知申请人。

제4장 행정복의의 결정 第四章 行政复议决定

제32조 행정복의기구에서 행정복의사건을 심리할 때는 2명 이상의 행정복의 담당직원

이 참여하여야 한다.

第三十二条 行政复议机构审理行政复议案件，应当由2名以上行政复议人员参加。

제33조 행정복의기구는 필요할 경우 실지조사를 통하여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요구하거나 행정복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의 방식을 적용하여 심리할 수 있다.

第三十三条 行政复议机构认为必要时，可以实地调查核实证据；对重大、复杂的案件，申请人提出要求或者行政复议机构认为必要时，可以采取听证的方式审理。

제34조 행정복의 담당자는 관련 부서 및 인력에 대해 조사 및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열람, 복사, 수집할 수 있고, 관련자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조사 및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행정복의 담당자는 2명이 이상이어야 하고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를 받는 부서 직원은 행정복의 담당자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현장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 증거조사에 필요한 시간은 행정복의 심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第三十四条 行政复议人员向有关组织和人员调查取证时，可以查阅、复制、调取有关文件和资料，向有关人员进行询问。

调查取证时，行政复议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向当事人或者有关人员出示证件。被调查单位和人员应当配合行政复议人员的工作，不得拒绝或者阻挠。

需要现场勘验的，现场勘验所用时间不计入行政复议审理期限。

제35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 제3자가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三十五条 行政复议机关应当为申请人、第三人查阅有关材料提供必要条件。

제36조 행정복의법 제14조에 따라 당초 행정복의 사건에 대해 신청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행한 부서 또는 기구는 서면으로 답변서와 함께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三十六条 依照行政复议法第十四条的规定申请原级行政复议的案件，由原承办具体行政行为有关事项的部门或者机构提出书面答复，并提交作出具体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

제37조 행정복의기간에 전문사항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감정기관에 감정을 진행할 수 있고, 또한 행정복의기구에 감정기관의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감정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감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행정복의 심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第三十七条 行政复议期间涉及专门事项需要鉴定的，当事人可以自行委托鉴定机构进行鉴定，也可以申请行政复议机构委托鉴定机构进行鉴定。鉴定费用由当事人承担。鉴定所用时间不计入行政复议审理期限。

제38조 신청인은 행정복의 재결 전에 스스로 행정복의 청구를 철회할 수 있고 행정복의기구의 동의를 거쳐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행정복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동일한 사실 및 이유로 재차 행정복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복의 청구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철회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三十八条 申请人在行政复议决定作出前自愿撤回行政复议申请的，经行政复议机构同意，可以撤回。

申请人撤回行政复议申请的，不得再以同一事实和理由提出行政复议申请。但是，申请人能够证明撤回行政复议申请违背其真实意思表示的除外。

제39조 행정복의기간에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행정복의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적법하게 행정복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三十九条 行政复议期间被申请人改变原具体行政行为的，不影响行政复议案件的审理。但是，申请人依法撤回行政复议申请的除外。

제40조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유재량권

을 행사하여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청구한 후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행정복의결정 전에 합의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구에 서면으로 합의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의내용이 사회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 행정복의기구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第四十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行政机关行使法律、法规规定的自由裁量权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申请行政复议，申请人与被申请人在行政复议决定作出前自愿达成和解的，应当向行政复议机构提交书面和解协议；和解内容不损害社会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的，行政复议机构应当准许。

제41조 행정복의기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복의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행정복의는 중지된다.

- (1) 신청인인 자연인이 사망하고, 그 친족이 아직 행정복의에 참가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2) 신청인인 자연인이 행정복의 능력을 상실하고 아직 법정대리인의 행정복의 참가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3) 신청인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산되고 아직 권리의무 승계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4) 신청인인 자연인이 행방불명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
- (5) 신청인, 피신청인이 불가항력으로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 (6) 안전이 법률 적용문제에 관련된 경우로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 (7) 안전심리에 기타 안전의 심리결과가 근거로 필요하나 당해 기타 안전의 심리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 (8) 그 밖에 행정복의를 중지하여야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복의 중지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 행정복의 안전의 심리를 즉시 재개하여야 한다.

행정복의기구는 행정복의안전 심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第四十一条 行政复议期间有下列情形之一的，影响行政复议案件审理的，行政复议中止：

- (一) 作为申请人的自然人死亡，其近亲属尚未确定是否参加行政复议的；**

- (二) 作为申请人的自然人丧失参加行政复议的能力，尚未确定法定代理人参加行政复议的；
- (三) 作为申请人的法人或者其他组织终止，尚未确定权利义务承受人的；
- (四) 作为申请人的自然人下落不明或者被宣告失踪的；
- (五) 申请人、被申请人因不可抗力，不能参加行政复议的；
- (六) 案件涉及法律适用问题，需要有权机关作出解释或者确认的；
- (七) 案件审理需要以其他案件的审理结果为依据，而其他案件尚未审结的；
- (八) 其他需要中止行政复议的情形。

行政复议中止的原因消除后，应当及时恢复行政复议案件的审理。

行政复议机构中止、恢复行政复议案件的审理，应当告知有关当事人。

제42조 행정복의기간 중에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복의는 종료된다.

- (1) 신청인이 행정복의 청구의 철회를 요구하고 행정복의기구가 철회를 허가한 경우
- (2) 신청인인 자연인이 사망한 후 친족이 없거나 그 친족이 행정복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 (3) 신청인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해산하고 그 권리의무의 승계인이 행정복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 (4)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행정복의기구의 허가를 받아 합의한 경우
- (5) 신청인이 행정구류 또는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청구한 후 신청인이 동일한 위법행위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당해 행정구류 또는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가 형사구류로 변경되는 경우

이 조례 제41조제1관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행정복의를 중지하고, 만 60일 이내에 행정복의 중지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행정복의는 종료된다.

第四十二条 行政复议期间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复议终止：

- (一) 申请人要求撤回行政复议申请，行政复议机构准予撤回的；
- (二) 作为申请人的自然人死亡，没有近亲属或者其近亲属放弃行政复议权利的；
- (三) 作为申请人的法人或者其他组织终止，其权利义务的承受人放弃行政复议权利的；
- (四) 申请人与被申请人依照本条例第四十条的规定，经行政复议机构准许达成和解的；

(五) 申请人对行政拘留或者限制人身自由的行政强制措施不服申请行政复议后，因申请人同一违法行为涉嫌犯罪，该行政拘留或者限制人身自由的行政强制措施变更为刑事拘留的。

依照本条例第四十一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第（三）项规定中止行政复议，满60日行政复议中止的原因仍未消除的，行政复议终止。

제43조 행정복의법 제28조제1관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있어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명료하며, 적용한 근거가 정확하고, 처리절차가 합법적이며, 내용이 타당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결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第四十三条 依照行政复议法第二十八条第一款第（一）项规定，具体行政行为认定事实清楚，证据确凿，适用依据正确，程序合法，内容适当的，行政复议机关应当决定维持。

제44조 행정복의법 제28조제1관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법정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일정한 기간 내에 법정책임을 이행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第四十四条 依照行政复议法第二十八条第一款第（二）项规定，被申请人不履行法定职责的，行政复议机关应当决定其在一定期限内履行法定职责。

제45조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행정복의법 제28조제1관제3항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당해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취소, 변경을 결정하거나 당해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결정하여야 한다.

第四十五条 具体行政行为有行政复议法第二十八条第一款第（三）项规定情形之一的，行政复议机关应当决定撤销、变更该具体行政行为或者确认该具体行政行为违法；决定撤销该具体行政行为或者确认该具体行政行为违法的，可以责令被申请人在一定期限内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

제46조 피신청인이 행정복의법 제23조에 따라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초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증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며, 행정복의기관은 당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第四十六条 被申请人未依照行政复议法第二十三条的规定提出书面答复、提交当初作出具体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的，视为该具体行政行为没有证据、依据，行政复议机关应当决定撤销该具体行政行为。

제47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이를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1)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절차가 합법적인 것이 인정되나 명확히 부당하거나 근거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 (2)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증거가 부족하나, 행정복의기관이 심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확실히 한 경우

第四十七条 具体行政行为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复议机关可以决定变更：

- (一) 认定事实清楚，证据确凿，程序合法，但是明显不当或者适用依据错误的；
- (二) 认定事实不清，证据不足，但是经行政复议机关审理查明事实清楚，证据确凿的。

제48조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청구의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이 행정기관이 법적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행정복의를 청구하고, 행정복의기관이 이를 수리한 후에 당해 행정청에게 그에 상응하는 직책이 없거나 수리하기 전에 이미 법적 직책이 이행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 (2) 행정복의 청구를 수리한 후에 당해 행정복의 청구가 행정복의법 및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리 조건에 맞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상급 행정기관은 행정복의기관이 행한 행정복의 청구의 반려가 이유 없을 경우 심리를 재개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第四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复议机关应当决定驳回行政复议申请：

- (一) 申请人认为行政机关不履行法定职责申请行政复议，行政复议机关受理后发现该行政机关没有相应法定职责或者在受理前已经履行法定职责的；
- (二) 受理行政复议申请后，发现该行政复议申请不符合行政复议法和本条例规定的受理条件的。

上级行政机关认为行政复议机关驳回行政复议申请的理由不成立的，应当责令其恢复审

理。

제49조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법 제28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법률, 법규, 예규의 기한 내에서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법률, 법규, 예규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60일이다.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피신청인이 행한 새로운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四十九条 行政复议机关依照行政复议法第二十八条的规定责令被申请人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的，被申请人应当在法律、法规、规章规定的期限内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法律、法规、规章未规定期限的，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的期限为60日。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被申请人重新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제50조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스스로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조해를 진행할 수 있다.

(1)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법률, 법규의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제기하는 경우

(2) 당사자 간에 행정배상 또는 행정보상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조해를 통해 합의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조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해서에는 행정복의청구, 사실관계, 이유 및 조해결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행정복의기관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행정복의조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서명과 함께 법적 효력을 지닌다.

조해가 합의에 이르지 않거나 조해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일방이 번복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즉시 행정복의결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第五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复议机关可以按照自愿、合法的原则进行调解：

(一)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行政机关行使法律、法规规定的自由裁量权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申请行政复议的；

(二) 当事人之间的行政赔偿或者行政补偿纠纷。

当事人经调解达成协议的，行政复议机关应当制作行政复议调解书。调解书应当载明行政

复议请求、事实、理由和调解结果，并加盖行政复议机关印章。行政复议调解书经双方当事人签字，即具有法律效力。

调解未达成协议或者调解书生效前一方反悔的，行政复议机关应当及时作出行政复议决定。

제51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의 행정복의 청구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 대해 불리한 행정복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第五十一条 行政复议机关在申请人的行政复议请求范围内，不得作出对申请人更为不利的行政复议决定。

제52조 제3자가 기한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함이 없이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복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第五十二条 第三人逾期不起诉又不履行行政复议决定的，依照行政复议法第三十三条的规定处理。

제5장 행정복의의 지도 및 감독

第五章 行政复议指导和监督

제53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업무의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행정복의기구는 관할 행정복의기관의 지도에 따라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복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수행한다.

第五十三条 行政复议机关应当加强对行政复议工作的领导。

行政复议机构在本级行政复议机关的领导下，按照职责权限对行政复议工作进行督促、指导。

제54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 부서 및 하급 인민정부에 대해 행정복의 업무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행정복의기관은 그 행정복의기구의 행정복의직책 수행에 대해 감독하여야 한다.

第五十四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所属工作部门和下级人民政府履行行政复议职责的监督。

行政复议机关应当加强对其行政复议机构履行行政复议职责的监督。

제55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건전한 행정복의업무책임제를 구축하고, 행정복의업무를 관할 정부 목표책임제에 수용하여야 한다.

第五十五条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行政复议工作责任制，将行政复议工作纳入本级政府目标责任制。

제56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직책권한에 따라 정기적인 전면조사 및 부분조사를 통해 관할 부서 및 하급 인민정부의 행정복의사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즉시 관련 업무에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第五十六条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按照职责权限，通过定期组织检查、抽查等方式，对所属工作部门和下级人民政府行政复议工作进行检查，并及时向有关方面反馈检查结果。

제57조 행정복의기간 중에 행정복의기관은 피신청인 또는 기타 하급 행정청의 관계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후속조치가 필요함을 발견하는 경우 행정복의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행정복의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위법한 관계 행정행위를 정정하거나 후속조치의 추진 상황을 행정복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복의기간 중에 행정복의기관은 법률, 법규, 예규의 시행에 따르는 보편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 행정복의건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 및 법집행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第五十七条 行政复议期间行政复议机关发现被申请人或者其他下级行政机关的相关行政行为违法或者需要做好善后工作的，可以制作行政复议意见书。有关机关应当自收到行政复议意见书之日起60日内将纠正相关行政违法行为或者做好善后工作的情况通报行政复议机构。行政复议期间行政复议机构发现法律、法规、规章实施中带有普遍性的问题，可以制作行政复议建议书，向有关机关提出完善制度和改进行政执法的建议。

제58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행정복의기구는 정기적으로 관할 인민정부에 행정복의업무 상황을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第五十八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行政复议机构应当定期向本级人民政府提交行政复议工作状况分析报告。

제59조 하급 행정복의기관은 적시에 중요 행정복의 결정에 대해 상급 행정복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五十九条 下级行政复议机关应当及时将重大行政复议决定报上级行政复议机关备案。

제60조 각급 행정복의기구는 정기적으로 행정복의 인력에 대해 직무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행정복의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第六十条 各级行政复议机构应当定期组织对行政复议人员进行业务培训，提高行政复议人员的专业素质。

제61조 각급 행정복의기관은 정기적으로 행정복의업무를 평가하고, 행정복의업무를 수행하면서 성과가 뛰어난 부서 및 개인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을 하고 표상하여야 한다.

第六十一条 各级行政复议机关应当定期总结行政复议工作，对在行政复议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依照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제6장 법적 책임

第六章 法律责任

제62조 피신청인이 규정된 기간 내에 행정복의결정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운 행정행위를 한 경우 행정복의법 제37조에 따라 법적책임을 부과한다.

第六十二条 被申请人在规定期限内未按照行政复议决定的要求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或者违反规定重新作出具体行政行为的，依照行政复议法第三十七条的规定追究法律责任。

제63조 행정복의 담당자가 수행하는 조사 및 증거수집, 관련 문서 및 자료의 열람, 복

사, 수집에 대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거나 질서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第六十三条 拒绝或者阻挠行政复议人员调查取证、查阅、复制、调取有关文件和资料的，对有关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或者治安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제64조 행정복의기관 또는 행정복의기구가 행정복의법 및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복의 직분을 이행하지 않고, 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통해 독촉하여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 및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경고, 주의, 견책의 처분을 부과한다. 책임이 과중한 경우 법에 따라 강등, 직위해제, 해임의 처분을 부과한다.

第六十四条 行政复议机关或者行政复议机构不履行行政复议法和本条例规定的行政复议职责，经有权监督的行政机关督促仍不改正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警告、记过、记大过的处分；造成严重后果的，依法给予降级、撤职、开除的处分。

제65조 행정청 및 소속 직원이 행정복의법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구는 인사, 검찰부서에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건의할 수 있고, 관련자의 위법 사실에 관한 자료를 인사, 검찰부서에 직접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첩받은 인사, 검찰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복의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六十五条 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违反行政复议法和本条例规定的，行政复议机构可以向人事、监察部门提出对有关责任人员的处分建议，也可以将有关人员违法的事实材料直接转送人事、监察部门处理；接受转送的人事、监察部门应当依法处理，并将处理结果通报转送的行政复议机构。

제7장 부 칙

第七章 附则

제66조 이 조례는 2007. 8. 1.부터 시행한다.

第六十六条 本条例自2007年8月1日起施行。

북경시행정조해판법 北京市行政调解办法

북경시인민정부령 제264호, 2015. 5. 19. 북경시시인민정부 제80차 상무회의 심의에
통과되어 2015. 9. 1.부터 시행

目录

第一章 总 则
第二章 民事纠纷调解
第三章 行政争议调解
第四章 指导和监督
第五章 附 则

목 록

제 1 장 총 칙
제 2 장 민사분쟁조해
제 3 장 행정쟁의조해
제 4 장 지도와 감독
제 5 장 부 칙

제1장 총칙

第一章 总 则

제1조 행정기관의 행정조해를 규범화하여 적시에 실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본 시의 관련규정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 상황을 종합하여 이 판법을 제정한다.

第一条 为了规范行政机关的行政调解,及时、有效化解争议纠纷,促进社会和谐稳定,根据国家和本市有关规定,结合本市实际情况,制定本办法。

제2조 본 시의 각급 행정 기관은 행정조해를 할 때에 이 판법을 적용한다.
법률, 법규, 규장에 행정조해를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第二条 本市各级行政机关开展行政调解,适用本办法。
法律、法规、规章对行政调解另有规定的,从其规定。

제3조 본 시의 각급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아래의 쟁의분쟁에 대해 조해할 수 있다.

(1) 법률, 법규, 규장에 행정기관이 공민, 법인 기타 조직 간의 분쟁(이하 ‘민사분

쟁'이라 한다)을 조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1. 치안조해를 할 수 있는 민간 분류
 2. 교통사고손해배상분류
 3. 계약 분쟁
 4. 의료사고배상분쟁
 5. 소비자권익보호분류, 제품품질분류
 6. 토지도급경영분쟁
 7. 상표전용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범배상분류
 8. 환경오염배상분류
 9. 전력분류, 수도분류
 10. 기타 법에 따라 조해할 수 있는 민사 분쟁
- (2) 공민, 법인 기타 조직과 행정기관 간의 행정배상, 보상 및 행정 기관의 법률, 법
규, 규장 규정의 자유 재량권에 관한 논쟁

第三条 本市各级行政机关可以依法对下列争议纠纷进行调解：

- (一) 法律、法规、规章规定可以由行政机关调解的公民、法人和其他组织之间的纠纷(以下简称民事纠纷)：
1. 可以进行治安调解的民间纠纷；
 2. 交通事故损害赔偿纠纷；
 3. 合同纠纷；
 4. 医疗事故赔偿纠纷；
 5. 消费者权益保护纠纷、产品质量纠纷；
 6. 土地承包经营纠纷；
 7. 侵犯商标专用权、专利权等知识产权的赔偿纠纷；
 8. 环境污染赔偿纠纷；
 9. 电力纠纷、水事纠纷；
 10. 其他依法可以调解的民事纠纷。
- (二)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与行政机关之间关于行政赔偿、补偿以及行政机关行使法律、法规、规章规定的自由裁量权产生的争议(以下简称行政争议)。

제4조 행정조해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합법적이며 공평하고 공정하며 효과원칙을 중시

해야 한다.

第四条 行政调解应当遵循自愿、合法、公平公正、注重效果原则。

제5조 시와 구, 현정부는 행정구역 내 행정조해 업무의 리더십을 강화하여야 하고, 행정조해와 인민조해,⁷⁾ 사법조해의 연결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행정조해에 필요한 업무 조건과 비용을 보장하여 행정조해를 강화해야 한다.

시·구·현정부 업무부문은 행정조해 업무에 대한 업무 지도와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시와 구, 현정부 법제기관은 본 행정구역이 행정조해 업무의 운영, 지도, 협조와 감독한다.

第五条 市和区、县政府应当加强对本行政区域内行政调解工作的领导，健全行政调解与人民调解、司法调解的衔接机制，保障行政调解所必需的工作条件和经费，加强行政调解队伍建设。

市和区、县政府工作部门应当加强对本领域、本系统行政调解工作的业务指导和协调推进。

市和区、县政府法制机构负责推进、指导、协调和监督本行政区域行政调解工作。

제6조 행정기관은 본 기관의 행정조해를 전문적으로 총괄하는 기구를 확정하고, 본 기관의 구체적 조해업무를 지도와 행정조해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행정조해 보조인원을 채용해 행정조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행정조해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한다.

第六条 行政机关应当确定专门机构统筹本机关的行政调解工作，并指导本机关具体承担行政调解工作的机构开展行政调解。

行政机关可以根据工作需要聘请行政调解辅助人员，保证行政调解工作正常开展。

行政调解工作所需经费列入本行政机关的预算，由本级财政予以保障。

제7조 행정기관의 행정조해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야 하며,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 이익과 공공 이익, 그리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7) <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 第二条 本法所称人民调解，是指人民调解委员会通过说服、疏导等方法，促使当事人在平等协商基础上自愿达成调解协议，解决民间纠纷的活动。 “인민조해”란 인민조해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를 설득하여 조해 협의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된다.

행정기관의 민사분쟁조해는 객관적인 중립을 지키고, 일방당사자를 두둔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기관의 행정쟁의 조해는 법에 따른 행정관리업무의 수행에 영향을 주거나 행정조해로 행정집행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第七条 行政机关开展行政调解，应当以事实为依据，以法律为准绳，不得损害国家利益、公共利益，以及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

行政机关调解民事纠纷，应当保持客观中立，不得偏袒、包庇一方当事人。

行政机关调解行政争议，不得影响依法履行行政管理职责，不得以行政调解代替行政执法。

제8조 행정기관은 행정조해에서 치안사건이나 형사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쟁의분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公安기관이나 기타 처리 권한있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八条 行政机关在行政调解中发现可能引起治安案件、刑事案件或者其他影响社会稳定的争议纠纷，应当及时通知公安机关或者其他有权处理的部门。

제9조 당사자는 행정조해 과정에서 질서 정연하게 조해하고 중재자를 존중하고 쟁의 행위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며 합의 이행을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행정조해에서 당사자의 증거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당사자의 조해중지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第九条 当事人在行政调解中应当遵守调解秩序，尊重参与调解的人员，如实陈述争议纠纷事实，自觉履行达成的调解协议。

行政机关在行政调解中不得拒绝当事人提供证据，不得拒绝当事人终止调解的要求。

제2장 민사분쟁조해

第二章 民事纠纷调解

제10조 제3조(1항)에 규정된 민사분쟁에 대해 당사자는 법률, 법규, 규장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조해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사분쟁의 조해를 신청하는 것은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1) 민사분쟁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어야 한다.
- (2) 구체적 조해 요청의 사실과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 (3) 민사분쟁은 아직 인민법원, 중재기구, 인민조해기구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의해 접수되거나 처리되지 않아야 한다.

당사자가 민사분쟁 조해를 신청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황, 조해, 사실, 사유 등을 설명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第十条 对本办法第三条第(一)项规定的民事纠纷，当事人可以申请法律、法规、规章规定的行政机关进行调解。

当事人申请调解民事纠纷应当符合下列条件：

- (一)与民事纠纷有直接利害关系；
 - (二)有明确具体的调解请求、事实和理由；
 - (三)民事纠纷尚未被人民法院、仲裁机构、人民调解组织或者其他行政机关受理或者处理。
- 当事人申请调解民事纠纷应当说明其基本情况、调解请求、事实和理由等。行政机关应当自当事人申请之日起5个工作日内征求对方当事人意见，并决定是否受理。

제11조 행정기관은 행정규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조해 범위에 해당하는 민사분쟁을 발견할 때에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해할 수 있다.

第十一条 行政机关在履行行政管理职责过程中发现属于行政调解范围的民事纠纷，可以在征得双方当事人同意后启动调解。

제12조 행정기관의 민사분쟁 조해는 행정조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실무자가 행정조해를 맡는다.

第十二条 行政机关调解民事纠纷，由其具体承担行政调解工作的机构的工作人员担任行政调解人员。

제13조 행정기관은 조해 시간, 장소, 조해공무원 등의 사항을 알려 주고,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중재신청의 시효기간을 제시해야 하며, 수리하지 않을 경

우에는 당사자에게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第十三条 行政机关决定调解的，应当告知当事人调解的时间、地点、调解人员等事项，并提示就纠纷提起诉讼、申请仲裁的时效期间；决定不予受理的，应当告知当事人理由。

제14조 행정조해공무원은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발적으로 회피하여야 하고, 자발적으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민사 분쟁 당사자 또는 당사자와 가까운 친척 관계자

(2) 민사 분쟁과 밀접한 이해 관계

(3) 민사 분쟁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 조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당사자가 회피신청을 할 경우 행정기관은 즉시 회피여부를 결정한다. 회피결정이 있으면 즉시 행정조해 직원을 변경하고, 기각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고지한다.

第十四条 行政调解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主动回避；不主动回避的，当事人有权申请其回避：

(一)是民事纠纷当事人或者与当事人有近亲属关系的；

(二)与民事纠纷有利害关系的；

(三)与民事纠纷当事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调解的。

当事人申请回避的，行政机关应当及时作出是否回避的决定。决定回避的，应当及时更换行政调解人员；不需要回避的，告知当事人理由。

제15조 당사자 이외의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민사분쟁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조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 조해 참가를 통지할 수 있다.

第十五条 当事人之外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与民事纠纷有利害关系的，可以申请参加调解或者由行政机关通知其参加调解。

제16조 행정기관은 민사분쟁을 조해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전문 인력 또는 기타 관계자를 초청하여 조해에 참여할 수 있다.

第十六条 行政机关调解民事纠纷，根据需要，可以邀请有关单位、专业人员或者其他有关人员参与调解。

제17조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을 조해할 때 당사자는 반드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증거물을 조사할 수 있다.

第十七条 行政机关调解民事纠纷，当事人应当如实提供证据。必要时，行政机关可以自行调查取证。

제18조 행정 기관의 민사분쟁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당사자에게 관련 법률, 법규, 규장과 정책을 설명하고, 사리분별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자발적인 조해를 이끌어 내야 한다.

第十八条 行政机关调解民事纠纷，应当听取当事人的陈述，向当事人讲解有关法律、法规、规章和政策，在分清事理、明辨法理的基础上，引导当事人自愿达成调解协议。

제19조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을 조해할 때는 행정기관이 수리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고, 사정이 복잡하거나 다른 특수 상황이 있으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양측의 의사 소통이 큰 차이가 있고, 합의 도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해를 중지할 수 있다.

第十九条 行政机关调解民事纠纷，应当自行政机关受理之日或者双方当事人同意调解之日起30日内结束；情况复杂或者有其他特殊情形的，经当事人同意，可以适当延长。行政机关认为当事人双方意愿差距较大、不具备达成协议的条件，可以终止调解。

제20조 조해가 이루어지면 행정기관은 조해협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행정기관의 인장을 날인하여 당사자들이 각 1부, 행정기관에 1부를 둔다. 당사자들은 구술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행정조해공무원이 협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당사자들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조해가 이뤄지지 않거나 당사자가 중지를 요구할 경우 행정기관은 조해를 중지하고, 당사자들에게 소송 등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第二十条 经调解达成协议的，行政机关应当制作调解协议书，调解协议书应当由当事人签名、盖章，加盖行政机关印章，当事人各执一份，行政机关留存一份；当事人认为无需制作调解协议书的，可以采取口头协议方式，行政调解人员应当记录协议内容，双方当事人

签名、盖章。

经调解无法达成协议或者当事人要求终止调解的，行政机关应当终止调解，并告知当事人可以通过诉讼、仲裁等途径解决民事纠纷。

제21조 조해협의서에는 아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 (1) 당사자의 기본 상황
- (2) 조해 청구
- (3) 조해 협의 내용
- (4) 기타 기재가 필요한 사항

第二十一条 调解协议书应当载明下列事项：

- (一)当事人的基本情况；
- (二)调解请求；
- (三)调解协议内容；
- (四)其他需要载明的事项。

제22조 조해협의서는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행정기관이 인장을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구술협의를 당사자들이 협의를 달성한 날부터 발생한다.

第二十二条 调解协议书自当事人签名、盖章，行政机关加盖印章之日起生效；口头协议自当事人达成协议之日起生效。

제23조 조해협의서에 대하여 당사자는 공증기관에 공증을 신청하거나 혹은 인민법원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第二十三条 对调解协议书，当事人可以依法申请公证机关公证，或者申请人民法院确认效力。

제24조 사안이 간단하고, 즉시 조해요건을 갖춘 민사분쟁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즉석에서 조해할 수 있다. 즉석에서 조해가 달성되고 당사자가 즉시 이행할 수 있으면 행정기관은 관련사항을 기록하되 조해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第二十四条 对案情简单、具备当场调解条件的民事纠纷，行政机关可以当场调解。当场调解达成协议且当事人能够即时履行的，行政机关应当将相关情况记录在案，无需制作调解

协议书。

제3장 행정쟁의조해 第三章 行政争议调解

제25조 당사자가 제3조(제2항) 규정의 행정쟁의에 대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복의기관의 결정, 인민법원의 판결이 결정되기 전에 행정행위기관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복의기관 또는 인민법원의 지도 하에 조해를 진행할 수 있다.

第二十五条 当事人因本办法第三条第(二)项规定的行政争议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在行政复议机关作出复议决定或者人民法院作出判决、裁定之前，作出行政行为的行政机关征得当事人同意后，可以在行政复议机关或者人民法院的指导下进行调解。

제26조 행정기관의 행정쟁의 조해는 원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 행정 조해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

원 행정행위를 처리한 자는 조해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第二十六条 行政机关调解行政争议，可以确定由原行政行为的承办机构具体承担行政调解工作，也可以确定由其他机构具体承担行政调解工作。
原行政行为的承办人不得担任调解人员。

제27조 당사자 외에도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과 행정쟁의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기관이 참여를 통지할 수 있다.

第二十七条 当事人之外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与行政争议有利害关系的，行政机关应当通知其参加调解。

제28조 조해직원은 행정쟁의를 조해할 때에는 당사인이 진술을 청취하고, 당사인의 진술을 듣고, 당사인에게 관련 법률, 법규, 규장과 정책을 설명하며, 당사인의 법 집행 근거, 이유 및 관련 고려요소를 고지하고, 당사인의 의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第二十八条 调解人员调解行政争议，应当听取当事人的陈述，向当事人讲解相关法律、法

规、规章和政策，告知当事人执法依据、理由和相关考虑因素，答复当事人的疑问。

제29조 행정기관의 행정쟁의 조해는 당사인의 조해 동의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끝나야 한다.

第二十九条 行政机关调解行政争议，应当在自当事人同意调解之日起15个工作日内结束。

제30조 행정기관은 당사인과 협의한 경우 협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당사인은 원 행정행위나 행정기관이 협의에 따라 원 행정행위를 변경할 경우 행정복의 신청 또는 소송 제기를 철회한다. 행정기관이 원 행정행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원 행정행위는 당연히 철회되고, 새로운 행정행위를 한 경우 행정복의기관 또는 인민법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과 당사인은 협의를 달성할 방법이 없거나 당사인이 조해중지를 요구할 경우 행정기관은 조해를 중지해야 한다.

第三十条 行政机关与当事人达成协议的，行政机关应当记录协议内容。当事人认可原行政行为或者行政机关按照协议改变原行政行为的，当事人撤回行政复议申请或者撤回起诉；行政机关改变原行政行为的，应当撤销原行政行为，重新作出行政行为，并告知行政复议机关或者人民法院。

行政机关与当事人无法达成协议或者当事人要求终止调解的，行政机关应当终止调解。

제4장 지도와 감독

第四章 指导和监督

제31조 행정기관은 행정조해업무르 기록하여 조해 신청, 접수, 과정, 협의 등 사항의 관련 자료철에 보존하여야 한다.

第三十一条 行政机关应当建立行政调解工作档案，将记载调解申请、受理、过程、协议等内容的相关材料立卷归档。

제32조 행정기관은 행정조해 업무 통계분석제도를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행정조해 수,

쟁의갈등 유형, 해결방식 등을 분석해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정부 법제사법 기관에 보고한다.

행정기관은 중요한 행정조해 사건을 정부의 법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三十二条 行政机关应当建立健全行政调解工作统计分析制度，定期对行政调解案件量、争议纠纷类型、结案方式等数据进行统计分析，并将相关数据和材料按照规定报送政府法制机构。

行政机关应当将重大行政调解案件按照规定报送政府法制机构备案。

제33조 시, 구, 현 정부 법제기구는 본 행정지역 내 행정조해 업무를 지도하여야 하고, 건전한 행정조해 업무 질서와 규범을 강화하며,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조해공무원을 정규조직하여 업무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행정조해공무원의 전문적 자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第三十三条 市和区、县政府法制机构应当加强对本行政区域内行政调解工作的指导，建立健全行政调解工作程序和规范，完善相关配套制度；定期组织对行政调解工作人员进行业务培训，提高行政调解工作人员的专业素质。

제34조 행정기관 및 업무담당자가 행정조해 과정에서 행정조해 업무를 불이행, 위법이행, 부당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담당자와 기타 책임자에 대해 행정 문책과 행정 처분을 한다.

第三十四条 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在行政调解过程中存在不履行、违法履行、不当履行行政调解职责行为的，按照国家和本市有关规定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行政问责和行政处分。

제5장 부칙

第五章 附 则

제35조 법률, 법규의 위임에 따라 공공사무기능을 관장하는 조직이 행한 행정조해를 실시할 때는 이 판법을 적용한다.

第三十五条 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开展行政调解，适用本办法。

제36조 이 관법에서 말하는 당사인은 민사분쟁의 쌍방 당사자와 행정쟁의의 행정상대
방을 포괄한다.

第三十六条 本办法所称的当事人包括民事纠纷的双方当事人和行政争议的行政相对人。

제37조 이 관법은 2015. 9. 1.부터 시행한다.

第三十七条 本办法自2015.9月1日起施行。